

【제1과목 50문】

【헌법 25문】

【문 1】 다음 중 현행 헌법상 의결정족수가 가장 가중된 경우는?

- ①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의결 ② 국회의원의 제명처분
- ③ 국무위원 해임 건의 ④ 계엄의 해제 요구
- ⑤ 거부된 법률안의 재의결

【문 2】 거주·이전의 자유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판례에 의함)

- ① 그 시행규칙이 정하는 지역에 한하여 한약업사를 허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한약업사의 영업지역을 제한하는 약사법 조항은 한약업사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 ② 병역의무자에 대한 해외여행허가제도는 헌법과 병역법이 정하는 병역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게 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서, 거주·이전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③ 지방자치단체장의 피선거권 자격요건으로서 90일 이상의 주민등록을 요구하고으로써 그 체류지와 거주지의 자유로운 결정과 선택에 사실상 제약을 받는다 하더라도 거주·이전의 자유가 침해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 ④ 1980년 해직공무원의 보상금 산출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해외이민을 제한사유로 정했다면 이는 사실상 국외이주자에게 불이익을 주어 국외이주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거주·이전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한 것이다.
- ⑤ 거주지를 기준으로 중·고등학교의 입학에 제한하는 것은 거주·이전의 자유의 제한이라 할 수 없다.

【문 3】 공무원임권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은?
(판례에 의함)

- ①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선고유예를 받으면 직무와 무관한 과실범의 경우까지 예외 없이 당연 퇴직시키게 하는 법규정은 공무원임권의 침해이다.
- ② 교육위원과 초·중등교원 간의 겸직을 금지한 법률은 공무원임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헌이다.
- ③ 선거법위반으로 5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에게 6년간 지방의회의원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공무원임권의 침해이다.
- ④ 지방자치단체장이 임기 중 그 직을 사퇴하고 국회의원선거 등 다른 공직선거에 출마하지 못하게 제한하는 것은 공무원임권의 부당한 침해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선거구역에서 실시되는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선거의 선거일 전 180일까지 그 직을 사퇴하도록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공무원임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 ⑤ 공직선거 후보자가 되려는 공무원에게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사직하게 한 것은 공무원임권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침해로 볼 수 있다.

【문 4】 현행 헌법상 헌법의 개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헌법의 개정은 기존의 헌법과 기본적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헌법의 특정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하거나 새로운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헌법의 파괴와 구별된다.
- ② 헌법개정안을 발의(제안)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과 대통령이다.
- ③ 헌법개정안을 20일 이상의 기간 공고하여야 하는데, 이는 필수적 절차이다.
- ④ 국회는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공고된 헌법안을 의결하거나 수정의결하여야 한다.
- ⑤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문 5】 현행 헌법상 지방자치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지방자치제의 본질에 관하여는 국가성립 이전부터 지역주민이 보유하여 온 고유권능이라는 자치고유권설이 통설이다.
- ② 지역주민은 지방의회의 의원을 선출하고, 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가 선출한다.
- ③ 광역지방자치단체(특별시와 광역시 및 도)와 기초지방자치단체(시와 군 및 구)의 관계는 상명하복관계이다.
- ④ 자치입법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지방의 사무에 관하여 정하는 조례와 지방의회가 법령과 조례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정하는 규칙이 있다.
- ⑤ 조례에 의한 벌칙의 규정이 지역에 따라 불평등한 것이 되더라도 이는 헌법이 지방자치제를 보장하고 있는 데에서 오는 불가피한 결과이므로 헌법위반이 아니다.

【문 6】 현행 헌법상 외국인이 주체가 될 수 있는 기본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외국인도 행복추구권의 주체가 된다.
- ② 평등권은 외국인에게는 보장되지 않는다.
- ③ 외국인의 입국허가여부는 당해 국가의 자유재량사항이지만 일단 입국을 허가받은 외국인에게는 출국의 자유가 보장된다.
- ④ 소비자의 권리는 외국인에게도 보장된다.
- ⑤ 선거권·피선거권·공무담임권·국민표결권 등 정치적 기본권은 외국인에게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문 7】 다음 중 합리적 차별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 ① 국유잡종재산을 시효취득의 대상에서 제외함
- ②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국고에서 보조함
- ③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함
- ④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음
- ⑤ 국가유공자·상이군경·전몰군경의 유가족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함

【문 8】 사법권의 독립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 ① 사법권이 입법권과 집행권 등 다른 국가권력으로부터 조직상, 운영상 분리·독립되어야 한다는 사법권독립론은 몽테스키외의 ‘법의 정신’에서 비롯되었다.
- ② 현행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여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보장하고 있다.
- ③ 입법부로부터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하여 현행 헌법상 국회의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권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 ④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의하면, 법원조직법 제8조의 ‘상급법원의 재판에 있어서의 판단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는 규정은 현행 헌법 제103조의 법관의 독립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⑤ 법관의 신분보장을 위하여, 법관은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문 9】 근로의 권리와 관련하여 현행 헌법상에 명문으로 규정된 것이 아닌 것은?

- ① 근로조건기준의 법률주의
- ② 국가의 고용증진의무
- ③ 여성근로자 및 연소근로자의 특별보호
- ④ 최저임금제의 실시 및 퇴직금의 우선보장
- ⑤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근로기회 우선보장

【문10】 국회의 의사절차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 ①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의하면, 의사공개 원칙은 국회 본회의에만 적용되고, 위원회의 회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②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의하면, 국회의장이 야당의원들에게 본회의 개의일시를 국회법에 규정된 대로 적법하게 통지하지 않은 것은 야당의원들의 헌법에 의하여 부여된 법률안 심의표결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다.
- ③ 회기불계속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는 미국과는 달리 현행 헌법은 회기계속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고,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예외이다.
- ④ 헌법개정안의 의결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 ⑤ 국회의원의 체포동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문11】 현행 헌법상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은?

- ① 무죄추정의 원칙
- ②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 등에 대한 구속이유 등의 통지제도
- ③ 국선번호인제도
- ④ 훈장 등 영전의 효력
- ⑤ 보석제도

【문12】 학문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 ① 학문의 자유의 주체는 대학이나 연구소의 구성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고, 또한 외국인이나 대학 등 단체도 그 주체가 될 수 있는바, 헌법재판소는 서울대학교가 학문의 자유와 대학자율권이라는 기본권의 주체라고 판시한 바도 있다.
- ② 학문의 자유에는 연구와 강의의 자유, 연구결과발표의 자유 외에 연구결과를 공동으로 연구하고 발표하기 위한 집회·결사의 자유도 포함되고, 최광의의 의미로는 대학의 자치도 포함된다.
- ③ 학문연구의 자유는 학문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형성하는 것으로서 법률로써도 제한할 수 없다.
- ④ 대학에 있어서의 교수는 강의의 자유를 남용하여 헌법에 대한 충성의무를 위반한 채 헌법적대적인 의견을 발표할 수 없다.
- ⑤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의하면, 중학교의 국어교과서에 대한 국정교과서제도는 교과서라는 형태의 도서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독점하는 것으로서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문13】 헌법소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현행 헌법재판소법상 헌법소원에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만 인정되고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은 인정되지 않는다.
- ②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에는 입법, 행정, 사법 등 모든 공권력이 포함되나, 공법상의 사단, 재단 등의 공법인, 국립대학교와 같은 영조물의 작용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 ③ 국민은 법률의 입법절차가 헌법이나 국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 자체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고발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자의적으로 무혐의 또는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에 고발인은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
- ⑤ 헌법소원은 보충성의 원칙에 의하여 기본권침해를 제거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없이 이를 청구할 수 없다.

【문14】 평등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현행 헌법상 평등에 관한 내용은 헌법 전문에는 없고, 헌법 본문에만 있다.
- ② 평등의 원칙은 최고의 헌법원리로서 헌법개정에 의하여서도 폐지할 수 없는 개정금지사항이라는 것이 학계의 통설이다.
- ③ 헌법재판소 판례는 평등권의 입법자구속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 ④ 평등권은 국가권력으로부터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이므로 사인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학계의 통설이다.
- ⑤ 대법원판례에 의하면, 강간죄의 처벌대상을 남자에 한하고 여성의 정조만을 보호하는 것은 성별에 의한 차별로서 헌법위반이다.

【문15】 생명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우리 헌법에는 생명권보장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지만 헌법재판소는 생명권을 헌법상의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
- ② 외국인도 생명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 ③ 현행헌법은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의 단심제와 관련하여 사형제도를 간접적으로 시인하고 있다.
- ④ 국가에 의한 우생학적 단종시술은 현행헌법상 허용된다.
- ⑤ 자신의 생명에 관한 처분권을 타인에게 위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문16】 형사피의자형사피고인의 형사절차상의 권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무죄추정의 원칙은 판결 이전의 절차에서는 물론 판결 자체와 판결형성의 과정에서도 준수되어야 할 원칙이다.
- ② 범죄의 혐의가 있어 기소된 자가 자신이 무죄임을 적극적으로 증명하지 못하면 법원은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
- ③ 피고인이 범죄사실에 대하여 자백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이더라도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있다.
- ④ 고문은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 ⑤ 신체의 구속을 당한 피의자의 변호인접견교통권은 수사기관의 처분에 의하여 이를 제한할 수 있다.

【문17】 현행헌법의 정부형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대통령은 5년의 임기동안 탄핵소추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회에 대하여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② 국회는 대통령에 대하여는 불신임결의를 할 수 없으나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에 대하여는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 ③ 대통령은 국회해산권과 법률안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국회를 견제할 수 있다.
- ④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임명함에 있어서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⑤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는 국무총리와 관계국무위원의 부서가 있어야 한다.

【문18】 선거관리위원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이를 폐지할 수 있다.
- ② 선거관리위원들의 정당가입은 허용된다.
- ③ 선거관리위원장은 표결권이 없다.
-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 ⑤ 위원의 임기는 6년이며, 연임에 관해서는 제한이 없다.

【문19】 위헌법률심판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 ① 군사법원을 포함한 각급 법원은 대법원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권만을 갖고 있을 뿐 위헌법률심판제청권 자체를 갖고 있지는 않다.
- ②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관한 법원의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
- ③ 독일이 구체적 규범통제와 추상적 규범통제를 모두 인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현행 우리나라 헌법은 추상적 규범통제를 인정하지 않고 구체적 규범통제만 인정하고 있다.
- ④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만 아니라 실질적 의미의 법률인 긴급명령·조약도 위헌법률심판제청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 ⑤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때에는 당해 사건은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된다.

【문20】 다음 중 헌법재판소가 행복추구권이나 그에서 파생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로 보지 아니한 것은?

- ① 주류판매업자나 주류중개업자에 대하여 매월 취급하는 희석식소주의 총구입액의 100분의 50이상을 당해 주류판매업자의 판매장이 소재하는 지역과 같은 지역에 소재하는 제조장으로부터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것
- ② 결혼식 등의 당사자가 자신을 축하하러 온 하객들에게 주류와 음식을 접대하는 행위를 법으로 금하고, 그 위반행위를 처벌하는 것
- ③ 치과전공의 수련과정을 마쳤지만 치과전문의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시행규칙의 미비로 형벌의 위험을 감수하지 아니하고는 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없게 하는 것
- ④ 먹는 샘물에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것
- ⑤ 일반 미결수용자의 접견횟수를 매일 1회로 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군행형법시행령을 통하여 미결수용자의 면회횟수를 매주 2회로 제한하는 것

【문21】 우리 헌법 및 선거관계법령상 대통령의 선출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대통령선거에서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 ②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에 달한 국민은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있고, 그 출생 당시부터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 ③ 정당추천후보자와 무소속후보자는 모두 일정 금액을 기탁하여야 하나, 그 액수는 서로 다르다.
- ④ 대통령 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에 달하여야 당선인으로 결정된다.
- ⑤ 대통령선거에 관한 쟁송은 대법원의 진속관할에 속한다.

【문22】 다음 중 행정부와 입법부의 상호견제장치로 우리 헌법상 채택된 것은?

- ① 특별사면에 관한 국회의 동의권
- ② 선전포고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
- ③ 국회의 탄핵심판권
- ④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에 대한 국회의 해임의결권
- ⑤ 대통령의 국회해산권

【문23】 국회의원의 특권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행한 발언내용을 발언 직전에 원내 기자실에서 공표하는 행위는 직무상 발언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대의적 의사표현행위에 포섭될 수 있으므로, 면책된다.
- ②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임기중에만 인정되므로, 임기중에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이라도 임기가 끝난 후에는 그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 ③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아니하는바, 여기서 회기 중이라 함은 집회일로부터 폐회일까지의 전(全) 기간을 말하기 때문에 휴회 중의 기간도 포함된다.
- ④ 우리 헌법이 국회의원에게 보장하는 불체포특권은 범법행위를 행한 의원에 대한 국가의 소추권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 ⑤ 면책특권의 효력은 국회 내에서의 징계 등 책임 추궁에는 미치지 않는다.

【문24】 죄형법정주의와 이중처벌금지원칙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판례에 의함)

- ① 소급입법의 금지에 관한 헌법의 규정은 행위의 가벌성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소추가능성에만 연관될 뿐 가벌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공소시효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그 효력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② 공소시효제도의 실질은 국가형벌권의 소멸이라는 점에서 형의 시효와 마찬가지로 실체법적 성격이 있는 것이어서, 그 예외로서 시효가 정지되는 경우는 특별히 법률로서 명문의 규정을 둔 경우에 한하여야 하고 법률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다른 제도인 형사소송법상의 재정신청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공소시효의 정지를 인정하는 것은 피의자의 법적 지위의 안정을 법률상 근거 없이 침해하는 것이 되며 나아가서는 헌법상의 적법절차주의,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여 기소되고 처벌받는 결과도 생길 수 있으므로 헌법소원사건이 심판에 회부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심판대상인 피의 사실에 대한 공소시효는 정지되지 아니한다.
- ③ 형벌과 보호감호를 병과하는 것은 이중처벌이 아니다.
- ④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내부거래를 한 사업자에게 형벌과 과징금을 함께 부과하는 것도 이중처벌로 볼 수 없다.
- ⑤ 과태료는 형벌은 아니나 행정질서벌로서 형벌에 준하는 것이므로 죄형법정주의의 적용을 받는다.

【문25】 행정입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행정명령은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계가 있는 사항도 그 대상으로 할 수 있지만, 법규명령은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가 없는 사항을 그 대상으로 한다.
- ② 위임명령이란 헌법에 근거하고 법률의 위임에 따라 발하는 명령을 말하며, 법률의 위임에 의하지 아니하고 직접 헌법의 수권에 의한 위임명령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 ③ 집행명령은 새로운 입법사항(특히 국민의 권리와 의무)을 규정할 수 없다.
- ④ 법원은 명령·규칙의 위헌·위법 여부를 심사함으로써 행정입법을 통제할 수 있다.
- ⑤ 행정절차법에서는 행정입법에 대한 국민의 직접적인 통제방안의 하나로서 행정입법의 예고절차와 청문·공청회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 상법 25문 】

【문26】 주식회사 설립무효의 소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 ① 회사 설립무효의 소는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한 날로부터 2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② 회사 설립무효의 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 ③ 회사 설립무효의 소가 제기된 때에는 회사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④ 발기인이 회사 설립무효의 소를 제기한 때에는 피고인 회사를 대표하는 자는 감사가 된다.
- ⑤ 회사 설립무효의 소는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이다.

【문27】 다음 주식배당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 ① 주식배당은 배당가능이익의 자본전입에 의한 신주발행이므로 배당가능이익이 있어야 한다.
- ② 주식배당은 회사가 취득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으로 할 수 있다.
- ③ 주식배당으로 발행되는 주식의 발행가액은 주식의 권면액이다.
- ④ 주식배당이 행해지면 주식회사의 자본이 증가한다.
- ⑤ 주식배당은 수권주식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문28】 주식회사의 준비금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회사는 그 자본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매 결산기의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이상의 금액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액면 이상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그 액면을 초과하는 금액을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 ③ 이익준비금 또는 자본준비금은 자본의 결손전보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 ④ 회사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에 전입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 ⑤ 자본준비금으로 자본의 결손의 전보에 충당하고서도 부족한 경우가 아니면 이익준비금으로 이를 충당하지 못한다.

【문29】 다음 상업사용인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상법에는 상업사용인으로 지배인,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을 규정하고 있다.
- ② 상법상 영업상의 업무에 관하여 영업주를 대리할 권한이 없는 자는 상업사용인이 아니다.
- ③ 지배인은 지배인이 아닌 점원 기타 사용인을 선임 또는 해임할 수 있다.
- ④ 본점 또는 지점의 영업주임 기타 유사한 명칭을 가진 사용인은 본점 또는 지점의 지배인과 동일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보게 되므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 ⑤ 공동지배인을 둔 경우라도 지배인 1인에 대한 의사표시는 영업주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문30】 주식회사의 주식 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주식회사는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에는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 ② 주식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하여 자기의 주식을 양도할 목적으로 취득하거나, 퇴직하는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의 주식을 양수함으로써 자기의 주식을 취득함에 있어서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 ③ 회사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여 자기의 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받지 못한다.
- ④ 주식의 포괄적 교환, 주식의 포괄적 이전,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에는 자회사가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 ⑤ 자회사가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자회사는 그 주식을 취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모회사의 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

【문31】 주식회사 이사의 책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이사가 이사회에 승인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한 경우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② 이사가 이사회에 승인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한 경우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③ 이사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임무해태 행위가 이사회 결의에 의한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로도 임무해태 행위로 인하여 제3자가 입은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 ④ 이사의 임무해태 행위가 이사회 결의에 의한 것인 때 그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는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
- ⑤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은 면제할 수 없다.

【문32】 다음 중 보험자대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 ① 인보험의 경우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긴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못한다.
- ② 보험의 목적이 전부 멸실한 경우에 보험금액의 전부를 지급한 보험자는 그 목적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 ③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은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보험자가 취득하는 권리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④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보험자대위의 범리에 의하여 다른 공동불법행위자 및 그의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권의 소멸시효는 일반채권과 같이 10년이다.
- ⑤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보험자가 취득하는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과 그 기간점은 피보험자 등이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자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문33】 상법상 공동해손(共同海損)의 효과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공동해손으로 인한 채권 및 구상채권은 그 계산이 종료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하고, 이 기간은 연장할 수 없다.
- ② 공동해손의 액을 정함에 있어 선박의 가액은 도달의 때와 곳의 가액으로 하고 적하의 가액은 양육의 때와 곳의 가액으로 한다.
- ③ 공동해손의 분담비율은 위험을 면한 선박 또는 적하의 가액과 운임의 반액과 공동해손의 액과의 비율에 따라 결정한다.
- ④ 공동해손의 액을 분담한 후 선박, 속구 또는 적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유자에게 복귀된 때에는 그 소유자는 공동해손의 상금(償金)으로 받은 금액에서 구조료와 일부손실로 인한 손해액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 ⑤ 갑판에 적재한 하물은 보존된 경우에는 그 가액을 공동해손의 분담에 산입하고 손실된 경우에는 그 가액을 공동해손의 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문34】 회사의 조직변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맞지 않는 것은?

- ① 합자회사가 합명회사로 조직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무한책임사원뿐만 아니라 유한책임사원의 동의도 필요하다.
- ② 합명회사는 총사원의 동의로 유한책임사원을 새로 가입시켜서 합자회사로 그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
- ③ 합명회사사원으로서 조직변경에 의하여 유한책임사원이 된 자는 합자회사의 설립등기 전에 생긴 회사채무에 대하여는 등기 후 2년 내에는 무한책임사원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 ④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은 법원의 인가를 요한다.
- ⑤ 주식회사는 사채의 상환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총주주의 일치에 의한 총회의 결의가 있으면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

【문35】 회사분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 ②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는 때에는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③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전의 회사채무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한다.
- ④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는 분할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승계한다.
- ⑤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관련되는 각 회사의 주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에는 그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문36】 다음 중 주주총회의 결의 및 의결권 행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주주총회의 결의는 상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 ②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 ③ 의결권의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은 원본에 한하지 않고 사본도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 ④ 판례에 의하면,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를 위하여 회일의 3일 전에 회사에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는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를 위한 대리인의 선임을 거절할 수 있다.
- ⑤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외에는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문37】 주식양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 ② 주식의 양도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제한할 수 있다.
- ③ 기명주식도 단순한 주권의 교부만으로 양도할 수 있다.
- ④ 정관으로 주식양도에 이사회 승인이 필요한 것으로 정한 경우에 이사회 승인이 없이 한 주식의 양도는 당사자간에 있어도 그 효력이 없다.
- ⑤ 기명주식의 양수인이 회사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명의개서가 필요하다.

【문38】 어음의 선의취득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양수인이 양도행위에 존재하는 하자를 알지 못한 데에 중과실이 있으면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② 추심위임배서의 피배서인에게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③ 어음이 도품이나 유실물일 경우에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④ 배서금지어음에 대해서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⑤ 선의취득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형식적 자격을 가진 양도인으로부터 취득하여야 한다.

【문39】 다음 상법상 회사의 종류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상법상 회사에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의 4종류가 있다.
- ② 합명회사는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직접·연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무한책임사원만으로 구성되는 회사이다.
- ③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은 출자를 함과 아울러 업무집행권과 대표권을 가지나, 유한책임사원은 오직 자본을 제공하고 사업으로부터 생기는 이익을 분배받을 뿐이고, 업무집행에는 참가하지 못하여 감시권을 가지는데 그친다.
- ④ 주식회사의 주주는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직접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다만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인수한 주식금액을 한도로 출자의무만을 진다.
- ⑤ 유한회사는 회사채권자에 대하여는 직접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다만 회사에 대하여 일정한 출자의무만을 지는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는 회사이므로 사원 지분의 양도는 제한되지 않는다.

【문40】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목적물의 수령을 거부하고,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매도인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경매할 수 있다.
- ② 익명조합원이 출자한 금전 기타의 재산은 영업자의 재산으로 본다.
- ③ 익명조합은 영업자의 사망으로 종료한다.
- ④ 상호계산에서 당사자가 상계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은 6월로 한다.
- ⑤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검사 및 통지의무를 위반하면 이로 인한 계약해제권, 대금감액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잃는다.

【문41】 다음 영업양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
- ②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를 인수할 것을 광고한 때에는 양수인이 변제할 책임을 지고, 양도인의 책임은 위 광고한 때에 즉시 소멸한다.
- ③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영업양수인이 변제의 책임을 지는 경우 양도인의 제3자에 대한 채무는 영업양도 또는 광고 후 2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 ④ 영업양도인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 ⑤ 양도인의 상호의 계속 사용은 일반적으로 양도인이 사용하였던 상호와 전적으로 동일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전후의 상호가 주요부분에서 공통되면 양도인의 상호의 속용이 된다.

【문42】 위탁매매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위탁매매인이라 함은 자기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 ② 위탁매매인은 다른 특약이 있는 경우에만 위탁자를 위한 매매에 관하여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위탁자에 대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 ③ 위탁자가 지정한 가액보다 고가로 매도하거나 염가로 매수한 경우에는 그 차액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위탁자의 이익으로 한다.
- ④ 위탁매매인이 위탁자로부터 받은 물건 또는 위탁매매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은 위탁자와 위탁매매인 또는 위탁매매인의 채권자간의 관계에서는 이를 위탁자의 소유로 본다.
- ⑤ 위탁매매인이 위탁받은 매매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위탁자에 대하여 그 계약의 요령과 상대방의 주소, 성명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하며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문43】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 ① 공중접객업자는 객으로부터 임치를 받은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불가항력으로 인함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 ② 화폐, 유가증권 기타의 고가물에 대하여는 객이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임치하지 아니하면 공중접객업자는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 ③ 임치 받지 아니한 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표시한 때에는 손님으로부터 임치 받지 아니한 휴대품에 대하여는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이 면제된다.
- ④ 공중접객업자와 객 사이에 임치가 성립하려면 우선 공중접객업자와 객 사이에 공중접객업자가 자기의 지배영역 내에서 목적물 보관의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음을 필요로 한다.
- ⑤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은 공중접객업자가 임치물을 반환하거나 객이 휴대물을 가져간 후 6월을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문44】 다음 중 상법상 선박소유자의 유한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채권은 어느 것인가?

- ① 여객의 운송의 지연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채권
- ② 선박의 운항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사람의 사망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채권
- ③ 선박의 운항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그 선박 이외의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채권
- ④ 침몰 당한 선박의 인양, 제거에 관한 채권
- ⑤ 선박의 운항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타 선박 내의 매점의 영업권 침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채권

【문45】 어음의 배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배서에 의하여 어음으로부터 생기는 모든 권리가 이전되는데, 이를 배서의 권리이전적 효력이라고 한다.
- ② 환어음의 배서인이 무담보배서를 한 경우에는 환어음의 인수 및 지급에 대한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③ 배서의 형식적 연속이 있는 때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된다.
- ④ 배서금지어음은 지명채권양도의 방법으로 양도할 수 있다.
- ⑤ 기한후배서는 만기일 이후의 배서이다.

【문46】 다음 상행위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 ① 어느 행위가 상법 제46조 소정의 기본적인 상행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영업으로 동조 각호 소정의 행위를 하는 경우이어야 하고, 여기서 영업으로 한다고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
- ② 상행위의 위임에 의한 대리권은 본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한다.
- ③ 상인이 그 영업범위 내에서 물건의 임치를 받은 경우에는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때에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하여야 한다.
- ④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 ⑤ 상행위의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여도 그 행위는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문47】 상법상 소멸시효의 기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창고업자의 임치인 또는 창고증권소지인에 대한 채권은 그 물건을 출고한 날로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②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③ 운송주선인의 책임은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④ 공동해손으로 인하여 생긴 채권은 당사자의 합의가 없는 경우 그 계산이 종료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
- ⑤ 상법상 보험료의 청구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문48】 다음 중 현행 상법상 이사회의 권한이 아닌 것은?

- ① 대규모 재산의 차입 ②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
- ③ 준비금의 자본전입 ④ 영업의 중요한 일부의 양도
- ⑤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 승인

【문49】 어음, 수표의 위조·변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판례에 의함)

- ① 위조된 수표를 할인에 의하여 취득한 사람이 입게 되는 손해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위조수표를 취득하기 위하여 현실적으로 출연한 할인금에 상당하는 금액이지 그 수표의 액면에 상당하는 금액이 아니다.
- ② 변조자가 어음상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한 경우에는 변조 후의 문언에 따라 책임을 진다.
- ③ 발행이 위조된 경우에도 그 어음에 배서한 자는 어음상의 책임을 진다.
- ④ 어음위조의 경우에도 표현대리에 있어서와 같이 피위조자가 어음상의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가 있다.
- ⑤ 배서인이 자신의 배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할 경우에는 그 위조에 대한 입증책임은 위조를 주장하는 배서인이 부담한다.

【문50】 보험계약에 있어 고지의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제3자를 위한 손해보험계약의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이를 보험자에게 고지하여야 하고, 그 고지가 없는 때에는 타인이 그 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보험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②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
- ③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2년 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④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할 경우 보험자는 보험수익자를 위하여 적립한 금액을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⑤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고지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제2과목 50문】

【 민법 40문 】

【문 1】 저당권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 ① 지상건물이 없는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라도, 그 설정당시 근저당권자가 건물의 건축에 동의하였다면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성립할 수 있다.
- ② 저당권설정자가 저당권이 설정된 지상에 건물을 축조한 경우에는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 ③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치지만 당사자가 저당권설정계약에 의하여 저당권의 효력이 부합물이나 종물에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할 수도 있다.
- ④ 피담보채무가 변제되어 무효로 된 저당권 설정등기의 유용은 그 등기를 유용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생기지 않은 경우에는 허용된다.
- ⑤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의 완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저당권도 소멸하는바, 이를 저당권의 부종성이라 한다.

【문 2】 공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 ① 변제공탁에 있어서 채권자에게 반대급부 기타 조건의 이행의 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이를 조건으로 공탁한 때에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는 한 그 변제공탁은 무효이다.
- ② 변제공탁이 적법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공탁물 출급청구를 한 때에 변제의 효력이 발생한다.
- ③ 채권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물을 받기를 통고하거나 공탁유효의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변제자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
- ④ 채무자가 채권자의 상대의무이행과 동시에 변제할 경우에는 채권자는 그 의무이행을 하지 아니하면 공탁물을 수령하지 못한다.
- ⑤ 채권자의 태도로 보아 채무자가 설사 채무의 이행제공을 하였더라도 그 수령을 거절하였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않고 바로 변제공탁할 수 있다.

【문 3】 다음 중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민법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 ②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 ③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④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 ⑤ 당사자는 금전이 아닌 것으로써 손해배상에 충당할 것을 예정할 수는 없다.

【문 4】 채권자 취소권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 ① 반드시 재판상 행하여야 한다.
- ②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한다.
- ③ 취소의 효력은 절대적이다.
- ④ 채권자 취소권의 행사에 의한 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다.
- ⑤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는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것이 명백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을 넘어서까지도 취소를 구할 수 있다.

【문 5】 보증채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 ① 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의 목적이거나 형태보다 중한 때에는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한다.
- ②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제자가 타인의 채무에 대한 보증인으로서 부담하는 보증채무는 변제자 자신의 채무에 비하여 변제자에게 그 변제의 이익이 적다고 보아야 한다.
- ③ 채무가 특정되어 있는 확정채무에 대하여 보증한 연대보증인으로서 자신의 동의 없이 피보증채무의 이행기가 연장되었더라도 그 연대보증채무를 면하지 못한다.
- ④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채권에 의한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⑤ 주채무자가 항변권을 포기하면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비추어 그 포기의 효력은 보증인에게도 미친다.

【문 6】 친권자와 자 사이의 이해상반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판례의 입장과 맞지 않는 것은?

- ① 공동상속인인 친권자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공동상속재산분할협의는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한다.
- ②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미성년의 자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하는 것은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③ 민법 제921조 제1항 소정의 '이해상반행위'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는 행위의 동기나 연유를 고려하여야 한다.
- ④ 친권자인 모가 자신이 연대보증한 채무의 담보로 자신과 자의 공유인 토지 중 자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법정대리인의 자격으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민법 제921조 제1항 소정의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한다.
- ⑤ 전 등기명의인이 미성년자이고 당해 부동산을 친권자에게 증여하는 행위에 있어서, 일단 친권자에게 이전등기가 경료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전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것으로 추정된다.

【문 7】 상속개시의 장소는 다음 중 어느 것인가?

- | | |
|-------------|----------------|
| ① 피상속인의 사망지 | ② 피상속인의 본적지 |
| ③ 상속인의 주소지 | ④ 주된 상속재산의 소재지 |
| ⑤ 피상속인의 주소지 | |

【문 8】 계약의 효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 ① 매매계약이 취소된 경우에 당사자 쌍방의 원상회복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 ② 가압류등기 등이 있는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와 아울러 가압류등기의 말소의무도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 ③ 변제자에게는 영수증청구권이 인정되는 바, 채권자의 영수증 교부의무와 채무자의 채무변제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 ④ 특정 물건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는데 천재지변으로 그 물건이 소실된 경우, 채무자위험부담주의에 따라 매매대금의 채무자인 매수인은 대금지급 채무를 면하지 못한다.
- ⑤ 쌍무계약의 당사자 중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문 9】 대답상속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태아에게도 대습상속권이 있다.
- ② 피상속인과 그의 딸이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그 사망한 딸의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대습상속을 할 수 있다.
- ③ 상속인이 될 자가 상속을 포기하면 그의 상속인이 대습상속을 하게 된다.
- ④ 처가 사망한 후 남편이 재혼한 때에는 사망한 종전 아내의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 상속에서 위 남편은 대습상속을 할 수 없다.
- ⑤ 대습상속인이 될 자는 피대습자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이어야 한다.

【문10】 다음 중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의 설명으로서 맞지 않는 것은?

- ①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재산상의 손해가 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②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감독의무자는 감독의무를 해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 ③ 도급인이 그 지시에 관하여 경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 ④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 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 알 수 없는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⑤ 태아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문11】 주택의 임차인이 2003.10.1.에 주택을 인도받고 10.5.에 주민등록을 마치고 10.20.에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발생하는 시기는?

- ① 10. 1. ② 10. 2. ③ 10. 5.
④ 10. 6. ⑤ 10. 21.

【문12】 다음 중 소멸시효기간이 가장 단기인 것은?

- ①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 ②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에 관한 채권
- ③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 ④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 ⑤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문13】 이행불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맞지 않는 것은?

- ① 이행불능의 판단기준에 관하여 통설 및 판례는 사회의 일반적 거래관념이라고 본다.
- ② 이행불능의 이유로 채권자가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그 불능이 채무자의 귀책사유에 기한 것이라야 한다.
- ③ 일시적 이행지체의 경우 반드시 이행불능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 ④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위험을 부담한다.
- ⑤ 이행불능의 경우에 계약을 해제하기 위하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문14】 다음 중 단독행위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 ① 단독행위는 일반적으로 조건과 친하지 않는 법률행위이다.
- ② 단독행위는 원칙적으로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허용된다.
- ③ 수인의 당사자가 하나의 단독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다.
- ④ 재단법인의 설립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다.
- ⑤ 증여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다.

【문15】 다음 중 민법상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 ① 조건성취의 효력은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으면 성취전으로 소급할 수 있다.
- ②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상태의 권리의무는 담보로 할 수 없다.
- ③ 해제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된 것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④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⑤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경우,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의제되는 시점은 신의성실에 반하는 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이다.

【문16】 대리권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미성년자라도 타인의 대리인이 될 수 있다.
- ②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보존행위와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만 할 수 있다.
- ③ 법정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 ④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한다.
- ⑤ 대리인이 수인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문17】 점유의 추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 ① 동산의 점유자가 그 동산을 반환시에 그 동산에 관한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하려면 그 점유자는 유익비 지출 당시 이를 점유할 권원이 있었음에 대하여 주장·입증할 책임을 진다.
- ② 부동산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그 부동산을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 ③ 물건의 점유자는 선의, 평온 및 공언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 ④ 전후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 ⑤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문18】 유치권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유치권자는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바, 이를 유치권의 불가분성이라 한다.
- ②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 ③ 유치권자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으면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 ④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인하여 소멸한다.

【문19】 수인의 채무자가 한 채권자에 대해 동일한 금전채무를 부담할 때, 그 채무는 원칙적으로 어떤 채무로 취급되는가?

- | | |
|-----------|---------|
| ① 연대채무 | ② 불가분채무 |
| ③ 분할채무 | ④ 보증채무 |
| ⑤ 부진정연대채무 | |

【문20】 채권의 소멸사유로서 변제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 ①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기만 하면 과실이 있더라도 그 효력이 있다.
- ②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이행기의 현상대로 그 물건을 인도하여야 한다.
- ③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변제장소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 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 ④ 영수증을 소지한 자에 대한 변제는 그 소지자가 변제를 받을 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변제자가 선의·무과실인 때에는 변제로서의 효력이 있다.
- ⑤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한다.

【문21】 상계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 ① 채권이 압류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②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③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
- ④ 상계의 의사표시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⑤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문22】 계약의 해제 및 해지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 ① 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는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
- ②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 ③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금전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 ④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계약은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 ⑤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문23】 환매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 ① 환매기간은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을 넘지 못하며, 약정기간이 이를 넘는 때에는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으로 단축된다.
- ② 환매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다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 ③ 당사자가 환매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은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으로 한다.
- ④ 매매의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에 매매등기와 동시에 환매권의 보류를 등기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 ⑤ 매도인은 기간 내에 대금과 매매비용을 매수인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환매할 권리를 잃는다.

【문24】 민법상 실종선고 및 그 취소의 효과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 ① 실종선고의 심판이 확정되면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의제된다.
- ② 실종선고는 실종자의 종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중심으로 하는 사법적 법률관계만을 종료케 한다.
- ③ 실종선고취소의 심판이 확정되더라도 실종선고 후 그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④ 실종선고의 취소가 있을 때에 실종의 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 ⑤ 실종선고의 취소가 있을 때에 실종의 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가 악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면 되고, 손해가 있더라도 이를 배상할 필요는 없다.

【문25】 다음 중 사단법인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 ① 자산에 관한 규정
- ②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 ③ 감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 ④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 ⑤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문26】 공유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 ①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 ②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 ③ 공유물의 이용 및 개량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 수로써 결정한다.
- ④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 ⑤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없어도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문27】 사용자책임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 ① 사무는 영리적인 것에 한하지 아니하며 일시적 사무인지 또는 계속적 사무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 ② 사용관계는 반드시 법률적으로 유효한 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③ 판례에 의하면 명의대여자는 사용자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④ 사용자책임이 생기더라도 피용자 자신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 ⑤ 사용자가 배상을 한 때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문28】 민법상 전세권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 ①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 미친다.
- ②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하여야 한다.
- ③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당사자가 약정한 기간이 5년을 넘는 경우에도 5년으로 단축된다.
- ④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하여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은 소멸한다.
- ⑤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때에는 전세권자는 민사집행법의 정한 바에 의하여 전세권의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문29】 선택채권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 ① 채권의 목적이 수개의 행위 중에서 선택에 좇아 확정될 경우에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다.
- ② 선택권행사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 선택권자가 그 기간 내에 선택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선택을 최고할 수 있고 선택권자가 그 기간 내에 선택하지 아니하면 선택권은 상대방에게 있다.
- ③ 선택권행사의 기간이 없는 경우에 채권의 기한이 도래한 후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선택을 최고하여도 선택권자가 그 기간 내에 선택하지 아니하면 선택권은 상대방에게 이전한다.
- ④ 선택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이를 철회할 수 있다.
- ⑤ 선택은 채권이 발생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문30】 연대채무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 ①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 ②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그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도 의무를 면한다.
- ③ 상계할 채권이 있는 연대채무자가 상계하지 아니한 때에도 다른 연대채무자가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상계할 수는 없다.
- ④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은 원칙적으로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 ⑤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지체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문31】 다음 중 혼인의 무효사유가 아닌 것은?

- ①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 ② 당사자 사이에 직계혈족, 8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그 배우자인 친족관계가 있거나 또는 있었던 때
- ③ 당사자 사이에 직계인척의 관계가 있거나 또는 있었던 때
- ④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 ⑤ 당사자 사이에 부(夫)의 8촌 이내의 혈족인 인척관계가 있거나 또는 있었던 때

【문32】 인지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 ① 부(父)가 금치산자인 때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인지할 수 있다.
- ② 자(子)가 사망한 후에는 그의 직계비속이 있더라도 이를 인지할 수 없다.
- ③ 부(父)는 포대중에 있는 자(子)에 대하여도 이를 인지할 수 있다.
- ④ 인지는 유언으로도 이를 할 수 있다.
- ⑤ 사기, 강박 또는 중대한 착오로 인하여 인지를 한 때에는 사기나 착오를 안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6월 내에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문33】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 ①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② 피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을 금지할 수 없다.
- ③ 상속개시 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 ④ 공동상속인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그 상속분에 응하여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이 있다.
- ⑤ 공동상속인은 다른 상속인이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채권에 대하여 분할 당시의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다.

【문34】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 도달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 ② 표의자가 그 통지를 발한 후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기 전에 사망하거나 행위능력을 상실하면 그 의사표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 ③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이를 받은 때에 무능력자인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하지 못한다.
- ④ 대리권 없는 자와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여부의 여부를 최고한 경우 본인이 그 기간 내에 응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 ⑤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

【문35】 민법상 임대차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 ① 부동산임차인은 당사자 간에 반대 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하여 그 임대차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
- ③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임차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 ④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없이 임차물을 전대하는 경우 임대인은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 ⑤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이에 부속한 물건이 있는 때에는 임대차의 종료시에 임대인에 대하여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문36】 도급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 ①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도급인은 원칙적으로 그 일을 완성한 후 지체없이 보수(도급대금)를 지급하여야 한다.
- ② 부동산공사의 수급인은 보수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설정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도 있고,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 ④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의 경우에 도급인이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⑤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문37】 부당이득의 반환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 ① 수익자가 그 받은 목적물을 반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 ② 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부당이득을 반환할 책임이 있다.
- ③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④ 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안 때에는 그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익반환의 책임이 있다.
- ⑤ 선의의 수익자가 폐소한 때에는 그 폐소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

【문38】 다음 중 유언에 참여하는 증인이 될 수 있는 자는?

- ① 파산자
- ② 한정치산자
- ③ 금치산자
- ④ 미성년자
- ⑤ 유언에 의하여 이익을 받을 자의 직계혈족

【문39】 다음 중 유증에 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 ① 재산의 무상양여 행위이다.
- ② 사후행위이다.
- ③ 단독행위이다.
- ④ 유증이 포괄적 유증인가 특정유증인가는 유언에 사용한 문언 및 그 외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탐구된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데, 통상은 상속재산에 대한 비율의 의미로 유증이 된 경우는 포괄적 유증, 그렇지 않은 경우는 특정유증이라고 할 수 있다.
- ⑤ 특정유증을 받은 자는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전이라도 자신이 유증 받은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다.

【문40】 상속의 효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법률 및 판례에 맞지 않는 것은?

- ①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②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상속된다.
- ③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공유로 한다.
- ④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
- ⑤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에 생전 증여의 가액을 가산한 후, 이 가액에 각 공동상속인별로 법정상속분율을 곱하여 산출된 상속분의 가액으로부터 특별수익자의 수증재산인 중 여 또는 유증의 가액을 공제하는 계산방법에 의하여 한다.

【호적법 10문】

【문41】 호적사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아니한 것은?

- ① 이혼하면서 친가에 복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일가를 창립한 경우에는 친가복적을 포기한 것이므로, 최초의 이혼시 일가 창립을 선택한 사람은 그 후 혼인을 하고 다시 이혼하는 경우에는 친가에 복적할 수 없고 일가를 창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혼하면서 폐가하였던 일가창립가를 부흥할 수 있다.
- ② 감독법원장의 지정·고시에 따라 호적사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게된 시·읍·면의 장은 호적용지로 작성된 호적에 기재된 사항을 보조기록장치에 이기하는 방법으로 기존의 호적을 개제하여야 하나 제적은 개제하지 아니한다.
- ③ 착오로 타인에게 사망기재를 하였을 경우에는 직권정정허가에 의하여 그 사망기재를 말소하고 원기재를 부활할 것이며, 사망한 자의 사망기재는 간이직권정정절차에 의하여 사망사유 유류의 직권기재를 하여야 한다.
- ④ 호적에 기재하는 외국인의 인명은 그 원지음을 한글로 표기하되, 중국 국적자로서 중국 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주에 주소가 있는 자의 인명에 대하여는 신분증서의 성명이 한국식 발음의 한글과 한자로 함께 기재되어 있음을 소명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신분증서에 기재된 한국식 발음도 원지음으로서 인정할 수 있다.
- ⑤ 시·읍·면의 장이 호적상의 오기된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하는 경우에 있어서 법원행정처장이 송부한 정비목록에 의하여 간이직권정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정정·기재서 작성을 생략한다.

【문42】 다음 입양 및 파양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아니한 것은?

- ① 양부모가 이혼하여 양모가 양부의 가(家)를 떠난 경우에도 양모자관계는 소멸하지 않는다.
- ② 배우자 있는 자가 양친이 되는 경우에는 부부공동입양의 원칙에 의하여 부부가 공동당사자로서 입양을 하여야 하나 배우자의 혼인중의 자를 양자로 하는 때에는 친생자관계가 없는 자가 단독으로 입양할 수 있다.
- ③ 양친이 부부일 때에는 공동으로 파양을 하여야 하나 양친이 이혼을 하였을 때에는 단독으로 파양할 수 있다.
- ④ 부부가 공동으로 파양을 할 수 없어 부부 일방이 양자와 파양을 한 경우에 있어서 파양의 효력은 파양의 당사자가 되지 못한 양친과 양자 사이에도 미친다.
- ⑤ 혼인의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면 혼인관계가 해소되지만 양친자관계는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더라도 해소되지 아니한다.

【문43】 개명에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호주승계로 인한 신호적 편제시 호적공무원이 이름을 잘못 이기하였으나 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이름으로 개명하였다면, 현재의 이름을 본래의 자신의 이름(舊名)으로 고치려면 다시 법원의 개명허가를 얻어야 한다.
- ② 개명허가신청에 대하여 법원의 기각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법원에는 다시 개명허가신청을 할 수 없다.
- ③ 외국인 부(父)의 성(姓)을 따라 외국식 이름으로 호적에 기재한 후, 한국인 모(母)의 성(姓)과 한국식 이름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명허가를 받을 필요없이 추완신고만 하면 된다.
- ④ 부(父)가 개명한 경우에 이미 혼인 등으로 부(父)의 호적에서 제적된 자녀들의 현호적상 부(父)란은, 그 개명사유가 기재된 호적등본을 소명자료로 관할 법원에 호적정정허가신청을 하여 정정하여야 한다.
- ⑤ 법률상 이해관계만 소명된다면 통칭명(通稱名)을 사유로 하는 개명신청은 제3자가 사망한 자를 사건본인으로 하여서도 할 수 있다.

【문44】 협의이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아니한 것은?

- ① 협의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주민등록지 동사무소에 이혼신고하여 주민등록부에 이혼사실이 기재되었더라도 이혼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 ②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은 후에 이혼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이혼의사확인의 효력이 소멸되므로 그 철회의사를 철회하더라도 이혼신고를 수리할 수 없다.
- ③ 협의이혼신고는 가정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하여야 하는바, 신고기간의 기산일에 초일은 산입한다.
- ④ 의사능력이 있으면 금치산자도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협의이혼을 할 수 있다.
- ⑤ 당사자 쌍방이 재외국민인 때에도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수 있으나, 서로 다른 국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재외공관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다.

【문45】 국적신고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 ①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정받은 자가 호적이 없는 경우에는 관할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취적신고를 함으로써 호적을 가질 수 있다.
- ② 외국의 성을 쓰는 국적취득자가 그 성을 쓰지 아니하고 새로이 성과 본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등본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당해 성과 본을 신고하여야 한다.
- ③ 대한민국 국민으로 귀화한 자는 귀화허가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귀화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④ 국적상실자 본인도 국적상실의 신고를 할 수는 있으나 신고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 ⑤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을 인지하는 경우에는 바로 피인지자에 대하여 인지자의 호적에 입적 기재하거나 준법정부가 편제한다.

【문46】 취적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 ①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취적허가 신청이 가능하다.
- ② 취적허가의 재판을 얻은 자가 취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호주에게 신고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 ③ 재외국민취적·호적정정및호적정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한 취적은 본적을 가지지 아니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할 수 있다.
- ④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보호대상자로서 군사분계선이남지역에 본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한 취적신청은 통일부장관이 서울가정법원에 취적허가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한다.
- ⑤ 시·읍·면의 장이 기아발견사실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기아발견조서를 작성하여 가정법원으로부터 성 및 본의 창설허가를 받은 후 기아발견조서를 신고서로 보아서 접수장에 접수함과 동시에 호적기재를 한다.

【문47】 인지신고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 ① 아직 포태중인 자에 대하여는 인지신고를 할 수 없다.
- ② 부가 혼인외의 자에 대하여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한 때에는 그 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다.
- ③ 유언에 의한 인지의 경우에는 유언집행자가 그 취임일로부터 1월 이내에 인지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④ 혼인신고가 위법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그 무효의 혼인중 출생한 자를 그 호적에 출생신고하여 등제한 이상 그 자에 대한 인지의 효력이 있다.
- ⑤ 법률상 타인의 친생자로 추정되는 자에 대하여서는 그 부모부터 친생부인의 소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인지할 수 없다.

【문48】 다음 호적등·초본과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아니한 것은?

- ①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재외공관은 호적의 등·초본발급에 관한 신청의 접수 및 교부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데, 이 때 호적등·초본의 발급기관은 법원행정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으로 한다.
- ② 호적등·초본의 교부를 청구하는 자는 호주 및 그 가족이라도 반드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호적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재외공관장이 호적등·초본을 교부하고 호적법시행규칙 소정의 호적등초·본수수료를 징수한 경우, 그 수수료는 호적등·초본 발급기관인 구청에 납부하여야 한다.
- ④ 호적등본은 원본과 동일하게 작성하되 말소·제적된 사람을 제외하고 작성할 수 있다.
- ⑤ 사생활의 비밀침해 등 부당한 목적이 아니면 누구나 수수료를 납부하고 호적등·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외국인이라도 마찬가지이다.

【문49】 다음 호적신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아니한 것은?

- ① 외국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은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 또는 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신고인의 생존중에 우송한 호적신고서는 그 사망후라도 시·읍·면의 장은 이를 수리하여야 하고 신고인의 사망시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
- ③ 외국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그 나라의 방식에 의하여 신고사건에 관한 증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1월 이내에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그 증서의 등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재외공관의 장이 위 ③의 경우와 같이 서류를 수리한 때에는 1월 이내에 외교통상부장관을 경유하여 이를 본인의 본적지 시·읍·면의 장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 ⑤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에 관하여는 호적신고를 할 수 없다.

【문50】 호적정정에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하나의 신청서에 사건본인 1인의 호적정정허가신청과 개명허가신청을 함께 구하는 경우에는 1인 1건으로 보아 1건에 해당하는 인지를 첨부한다.
- ② 호적상 출생일과 주민등록상 출생일이 다른 경우에는 설사 주민등록상 출생일이 실제와 같아 하더라도 관할 법원의 호적정정허가를 얻지 않는 한, 호적에 기재된 출생일에 따라 주민등록상 출생일을 정정하여야 한다.
- ③ 판결에 의해서만 정정할 수 있는 호적기재사항이라도 일단 법원의 호적정정허가를 얻어 정정한 경우에는 그 정정의 효력이 발생한다.
- ④ 제적부의 기재사항만을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 그 제적이 있는 지(地)나 현본적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중 편리한 곳에 호적정정허가신청을 할 수 있다.
- ⑤ 호주가 법원의 호적정정허가를 얻었으나 호적관서에 호적정정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호주승계인은 법원으로부터 다시 호적정정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과목 50문】

【형법 35문】

【문 1】 다음 중 절도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판례에 의함)

- ①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이에 피고인으로부터 영업허가명의 및 사업자등록명의를 빌리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피고인 명의로 발급된 영업허가증과 사업자등록증을 피해자가 교부 받아 보관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가져가버린 경우, 절도죄가 성립한다.
- ②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그 자체는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이 될 수 없다.
- ③ 타인의 전화기를 무단사용하는 경우,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④ 소유자의 승낙 없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서 다른 장소에 버린 경우, 절도죄가 아니라 자동차등불법사용죄가 성립한다.
- ⑤ 금방에서 마치 귀금속을 구입할 것처럼 가장하여 순금목걸이 등을 건네받은 다음 화장실에 갔다 오겠다는 핑계를 대고 도주한 경우, 절도죄가 성립한다.

【문 2】 다음 중 공무방해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판례에 의함)

- ① 수용자가 교도관의 감시, 단속을 피하여 규율위반행위를 하는 것만으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는 할 수 없고, 수용자가 아닌 자가 교도관의 감시 또는 감시를 피하여 금지물품을 교도소 내로 반입되도록 한 경우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 ②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라 함은 공무원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뿐 아니라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도 포함하는 것이다.
- ③ 절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 협박을 가한 때에는 준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고 양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나, 강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때에는 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는 실제적 경합관계에 있다.
- ④ 도청 수산과 계장으로서 어업허가 신청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피고인이, 출원인이 어업허가를 받을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직무상의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부하직원으로 하여금 어업허가 처리기안문을 작성하게 한 다음 피고인 스스로 중간결재를 하는 등 위계로써 농수산국장의 최종결재를 받았다면, 피고인의 위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직무유기죄에 해당하고, 양죄는 실제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 ⑤ 피의자나 참고인이 피의자의 무고함을 입증하는 등의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허위의 증거를 조작하여 제출하였고 그 증거조작의 결과 수사기관이 그 진위에 관하여 나름대로 충실한 수사를 하더라도 제출된 증거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하여 잘못된 결론을 내리게 될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는 위계에 의하여 수사기관의 수사행위를 적극적으로 방해한 것으로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문 3】 다음 중 위법성의 조각에 관한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이 자신의 처와 피해자가 피해자의 주택에서 간통을 할 것이라는 추측 하에 처와의 이혼소송에 사용할 증거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그들의 간통 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그 사진을 촬영하기 위하여 위 주택에 침입한 행위는 그 목적이 피해자의 주거생활의 평온이라는 법익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되고, 그와 같은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도 상당성도 인정되며, 불가피성 또한 인정되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 ② 공직선거 후보자 합동연설회장에서 후보자 갑이 적시한 연설 내용이 다른 후보자인 피고인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후보자 비방의 요건에는 해당되나 그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 갑의 연설 도중에 피고인이 마이크를 빼앗고 욕설을 하는 등 물리적으로 갑의 연설을 방해한 행위는 정당방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 ③ 인도네시아 등 외국에서 침구사자격을 취득하였으나 국내에서 침술행위를 할 수 있는 면허나 자격을 취득하지는 못한 피고인이 단순히 수지침 정도의 수준에 그치지 아니하고 환자들의 허리 부위, 다리 부위에도 침침을 시술하였고, 일부 환자는 나이가 많은 노인으로서 시술행위로 인한 부작용 내지 위험발생 가능성이 높았을 경우, 이러한 피고인의 침술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 ④ 이혼소송중인 남편이 찾아와 가위로 폭행하고 변태적 성행위를 강요하는 데에 격분하여 처가 칼로 남편의 복부를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⑤ 현행범인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경찰관들이 동행을 거부하는 자를 체포하거나 강제로 연행하려고 하자, 그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문 4】 업무방해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판례에 의함)

- ①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 하는 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그 직무집행이 정지된 자가 법원의 결정에 반하여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업무를 계속 행하는 경우, 그 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여야 한다.
- ④ 피고인이 서류배달업 회사가 고객으로부터 배달을 의뢰받은 서류의 포장 안에 특정종교를 비방하는 내용의 전단을 집어 넣어 함께 배달되게 하였다면, 이는 위 회사의 서류배달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 ⑤ 건물 임대를 업으로 하는 임대인이 구경장의 조경공사 촉구 지시에 따라 임대 건물 앞에서 1회적인 조경공사를 한 경우, 그 조경공사업무는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문 5】 중지범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적절치 못한 것은? (판례에 의함)

- ① 예비음모의 행위를 처벌하는 경우에 있어서 중지미수는 인정될 수 없다.
- ②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다음 번에 만나 친해지면 응해 주겠다는 취지의 간곡한 부탁으로 인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태워 집에까지 데려다 주었다면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 ③ 장롱 안에 있는 옷가지에 불을 놓아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불길의 치솟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물을 부어 불을 끈 경우 이를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라고 볼 수 없다.
- ④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그의 목 부위와 왼쪽 가슴 부위를 칼로 수 회 찔렀으나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서 많은 피가 흘러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겁을 먹고 그만 둔 경우 이를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라고 볼 수 없다.
- ⑤ 기밀탐지 임무를 부여받고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기밀을 탐지수집 중 경찰관이 피고인의 행적을 탐문하고 갔다는 말을 전해 듣고 지령사항 수행을 보류하고 있던 중 체포되었다면 이를 중지범으로 볼 수 있다.

【문 6】 방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판례에 의함)

- ① 정범이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하고 예비단계에 그친 경우에는, 이에 가공한다 하더라도 예비의 공동정범이 되는 때를 제외하고는 중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 ② 형법상 방조행위는 작위에 의한 경우 뿐만 아니라 부작위에 의하여도 성립된다.
- ③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방조는 유형적, 물질적인 방조뿐만 아니라 정범에게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무형적, 정신적 방조행위까지도 이에 해당한다.
- ④ 중범은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정범이 실행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한다.
- ⑤ 이미 스스로 입영기피를 결심하고 집을 나서는 사람에게 피고인이 이별을 안타까와 하는 뜻에서 잘 되겠지 몸조심하라고 악수를 나눈 행위는 입영기피의 범죄의사를 강화시킨 방조행위에 해당한다.

【문 7】 가석방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가석방의 기간은 무기형에 있어서는 10년으로 하고, 유기형에 있어서는 남은 형기로 하되, 그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 ② 무기징역에 있어서는 10년, 유기징역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 ③ 가석방 기간 중 과실로 인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도 가석방처분은 효력을 잃는다.
- ④ 벌금 또는 과료의 병과가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하여야 한다.
- ⑤ 가석방의 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이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아니하고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본다.

【문 8】 형법 제140조의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에 관한 설명 중 대법원 판례와 가장 어긋나는 것은?

- ① 집행관이 채무자 겸 소유자의 건물에 대한 점유를 해제하고 이를 채권자에게 인도한 후 채무자의 출입을 봉쇄하기 위하여 출입문을 판자로 막아 둔 것을 채무자가 이를 뜯어내고 그 건물에 들어갔다면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에 해당한다.
- ② 공무원이 실시한 봉인 등의 표시에 절차상 또는 실체상의 하자가 있으나 객관적·일반적으로 그것이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등으로 인정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경우,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의 객체가 된다.
- ③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행위 당시에 강제처분의 표시가 현존할 것을 요한다.
- ④ 피고인이 압류표시된 원동기를 가동하였다 하여 그 사실만으로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 ⑤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기하여 집행관이 한 강제처분 표시의 효력은 그 가처분 결정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 가처분 결정이 부당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

【문 9】 판결의 공시에 관한 형법 제58조의 규정 내용과 어긋나는 것은?

- ① 피고 사건에 대하여 무죄의 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다.
- ② 피해자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다.
- ③ 위 ②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의 부담으로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다.
- ④ 피고 사건에 대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다.
- ⑤ 피고 사건에 대하여 면소의 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다.

【문10】 뇌물죄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판례에 의함)

- ① 공무원이 뇌물로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받았으나 그 행위가 종료된 후 경제사정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당초의 예상과는 달리 그 사업 참여로 아무런 이득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뇌물수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②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 받았다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
- ③ 정치자금, 선거자금, 성금 등의 명목으로 이루어진 금품의 수수라 할지라도, 그것이 정치가인 공무원의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실체를 갖는 한 뇌물이다.
- ④ 일단 영득의 의사로 뇌물을 수수하였으나 그 액수가 너무 많아서 후일 이를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뇌물죄는 성립한다.
- ⑤ 뇌물로 공여된 당좌수표가 수수후 부도가 되었다 하더라도 뇌물죄는 성립한다.

【문11】 주거침입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판례에 의함)

- ① 연립주택 아래층에 사는 피해자가 위층 피고인의 집으로 통하는 상수도관의 밸브를 임의로 잠근 후 이를 피고인에게 알리지 않아 하루 동안 수도물이 나오지 않는 고통을 겪었던 피고인이 상수도관의 밸브를 확인하고 이를 열기 위하여 부득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 ②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용중인 공중화장실의 용변칸에 노크하여 남편으로 오인한 피해자가 용변칸 문을 열자 강간할 의도로 용변칸에 들어간 것이라면 피해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이를 승낙하였다고 볼 수 없어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
- ③ 주거침입죄는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행위자의 신체의 전부가 타인의 주거안으로 들어가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만 타인의 주거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거주자가 누리는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침입행위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이어서 그의 범의도 신체의 일부라도 타인의 주거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으면 인정되는 것이다.
- ④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웃 사이여서 평소 그 주거에 무상 출입하던 관계에 있었다 하더라도 범죄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승낙 없이 그 집 마당에 들어간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 ⑤ 강간의 범행을 목적으로 그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때에는 강간에 관한 죄 외에 주거침입의 죄가 따로 성립하나, 이 두 죄는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문12】 인과관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판례에 의함)

- ① 좌회전금지구역에서 좌회전을 하고 있는데, 50여미터 후방에서 따라오던 후행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피고인 운전차량의 좌측으로 돌진하여 교통사고 발생한 경우, 피고인이 좌회전금지위반행위와 교통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 ② 피고인이 자신이 경영하는 속셈학원의 강사로 피해자를 채용하고 학습교재를 설명하겠다고는 구실로 유인하여 호텔 객실에 감금한 후 강간하려 하자, 피해자가 완강히 반항하던 중 피고인이 대실시간 연장을 위해 전화하는 사이에 객실 창문을 통해 탈출하려다가 지상에 추락하여 사망하였다면, 피고인의 강간미수행위와 피해자의 사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③ 피해자가 평소 고혈압과 선천성혈관기형인 좌측전동맥류의 증세가 있었고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함에 있어 위와 같은 지병이 사망결과에 영향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다.
- ④ 공장에서 동료사이에 말다툼을 하던 중 삿대질하는 것을 피하고자 두어걸음 뒷걸음치다가 회전 중이던 십자형 스방기계 철받침대에 걸려 넘어져 사망하였다면, 피고인이 당시 바닥에 위와 같은 장애물이 있어서 뒷걸음치면 장애물에 걸려 넘어질 수 있다는 것까지는 예견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폭행치사죄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 ⑤ 운전사가 시동을 끄고 시동열쇠는 그대로 꽂아둔 채로 하차한 후 조수가 이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에, 시동열쇠를 그대로 꽂아둔 행위와 상해의 결과발생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과관계가 없다.

【문13】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강도죄(법정형 :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와 횡령죄(법정형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를 범한 자에 대하여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 횡령죄의 법정형 중 징역형을 선택한 후 경합범 가중을 하는 때의 처단형의 범위는?

- ① 3년 이상 22년 6월 이하 ② 3년 이상 5년 이하
- ③ 3년 이상 15년 이하 ④ 5년 이상 22년 6월 이하
- ⑤ 3년 이상 20년 이하

【문14】 친족상도례에 관한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판례에 의함)

- ① 호주인 갑이 그와 동일 호적 내에 있지만 동거하지 않는 자신의 종숙부(1992년에 이미 결혼하여 혼인신고하였으나 호적상 법정분가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호주의 호적부에 가족으로 그대로 남아 있음)인 을을 기망하여 그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을의 고소가 있어야만 갑의 위 사기죄를 논할 수 있다.
- ②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한 후 그 고소를 취소한 바 없다면, 비록 그 고소 전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았다 하더라도 그 후에 한 피해자의 위 고소는 유효하다.
- ③ 갑이 자신의 외사촌 동생인 을의 재물을 손괴하였다면(형법 제366조에 해당), 그 재물손괴죄는 을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다.
- ④ 갑이 흉기를 휴대하여 동거 친족인 을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형법 제331조 제2항에 해당), 갑은 그 형이 면제된다.
- ⑤ 범행 당시에는 친족관계가 없었는데, 그 범행 후에 부(父)에 의하여 비로소 인지되었다면, 그 인지의 소급효에 따라 형성되는 친족관계를 기초로 하여 친족상도례의 규정이 적용된다.

【문15】 유가증권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판례에 의함)

- ① 스키장의 회원용 리프트탑승권은 그 소지인이 스키장에서 거기에 기재된 일시에 리프트를 탑승할 수 있는 권리가 화체된 증권으로서 그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하는 유가증권이다.
- ② 은행을 통하여 지급이 이루어지는 약속어음의 발행인이 그 발행을 위하여 은행에 신고된 것이 아닌 발행인의 다른 인장을 날인하였다면 허위유가증권작성죄가 성립한다.
- ③ 증권이 비록 문방구 약속어음 용지를 이용하여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전체적인 형식·내용에 비추어 일반인이 진정한 것으로 오신할 정도의 약속어음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형법상 유가증권에 해당한다.
- ④ 갑이 그 망부(亡父)의 사망 후 그의 명의를 거래상 자기를 표시하는 명칭으로 사용하여 온 경우에는 갑에 의한 망부 명의의 어음발행은 갑 자신의 어음행위라고 볼 것이고 이를 가리켜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어음을 위조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⑤ 그 표면에는 전체 통화가능 금액과 발행인이 문자로 기재되어 있고, 자기(磁氣)기록 부분에는 당해 카드의 진정성에 관한 정보와 잔여 통화가능 금액에 관한 정보가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되어 있는 공중전화카드는 형법 제214조의 유가증권에 해당한다.

【문16】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판례에 의함)

- ① 부동산을 그 소유자로부터 매수한 자가 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제3자와 맺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매도인으로부터 바로 그 제3자에게 중간생략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 제3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토지수용보상금 중 일부를 소비하고, 이어 수용되지 않은 나머지 부동산 전체에 대한 반환을 거부한 경우, 그 반환거부행위는 그 금원 횡령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아닌 별개의 횡령죄를 구성한다.
- ② 절도범인으로부터 장물보관을 의뢰받고 그 정을 알면서 이를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자기 마음대로 이를 처분하였을 경우, 그 처분행위는 장물보관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불과하여 별도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③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신탁자의 승낙 없이 갑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했다가 후에 그 말소등기를 신청함과 동시에 을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따라 갑 명의의 근저당권말소등기와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 경료된 경우, 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행위는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한다.
- ④ 신용카드를 절취한 후 이를 사용한 경우 신용카드의 부정사용행위는 새로운 법익의 침해로 보아야 하지, 절도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볼 수 없다.
- ⑤ 절취한 자기앞수표(금융기관 발행)를 음식대금으로 교부하고 거스름돈을 환불받은 행위는 절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별도로 사기죄가 되지 아니한다.

【문17】 선고유예에 관한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판례에 의함)

- ① 선고유예의 요건 중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가 반드시 피고인이 죄를 깊이 뉘우치는 경우만을 뜻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하거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지 않고 부인할 경우에는 언제나 선고유예를 할 수 없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
- ② 선고유예판결을 할 경우에 그 판결이유에서는 선고할 형의 종류와 양, 즉 선고형을 정해 놓아야 하고, 그 선고를 유예하는 형이 벌금형일 경우에는 그 벌금액 뿐만 아니라 환형유치 처분까지 해 두어야 한다.
- ③ 주형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할 경우에도 추징을 선고할 수 있다.
- ④ 주형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하지 아니하면서 이에 부가할 몰수·추징에 대하여서만 선고를 유예할 수는 없다.
- ⑤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가 그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됨 없이 정해진 유예기간을 무사히 경과한 경우에는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되므로 그 자는 형법 제59조 제1항 단행에서 정한 선고유예 결격사유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18】 경합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바, 이를 흡수주의라 한다.
- ②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 개의 죄 사이에 벌금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가 있는 경우 피고인에 대하여 2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 ③ 금고와 징역은 동종의 형으로 간주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 ④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한 경우 그 각 도로교통법 위반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함이 대법원판례이다.
- ⑤ 대마취급자가 아닌 자가 대마를 절취하고, 흡입할 목적으로 이를 소지한 경우 절도죄와 무허가대마소지죄의 경합범으로 처벌한다고 함이 대법원판례이다.

【문19】 다음 중 절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판례에 의함)

- ① 피해자가 점원에게 금고 안의 돈을 가스대금으로 지급하라고 하고 외출하자, 점원이 이를 가지고 도주한 경우
- ② 위조된 유가증권을 절취한 경우
- ③ 당구장 영업이 끝난 후 청소를 하던 종업원이 손님이 떨어뜨린 지갑을 취득한 경우
- ④ 예약장 축의금 접수대에서 접수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축의금을 교부받아 가로챈 경우
- ⑤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후 그 곳 피해자의 자취방 벽에 걸려있던 피해자가 소지하는 물건들을 영득의 의사로 가지고 나온 경우

【문20】 갑은 을과 합동하여 병을 감금하고 병으로부터 신용카드를 강취한 후 자신이 그 신용카드의 소지인인양 가장하면서 가맹점의 점주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아 취득하였다. 갑의 죄책은?

- ① 감금죄, 특수강도죄, 신용카드부정사용죄, 사기죄
- ② 감금죄, 특수강도죄, 신용카드부정사용죄
- ③ 감금죄, 특수강도죄, 사기죄
- ④ 특수강도죄, 신용카드부정사용죄, 사기죄
- ⑤ 특수강도죄, 사기죄

【문21】 누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5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한다.
- ②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가 금고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누범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함이 대법원판례이다.
- ③ 가석방된 자가 가석방기간 중에 다시 죄를 범한 경우 누범으로 처벌한다고 함이 대법원판례이다.
- ④ 누범의 형은 그 죄에 정한 형의 단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
- ⑤ 누범에 대하여는 작량감경할 수 없다.

【문22】 문서위조 및 동행사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 ① 기존의 진정문서를 이용하여 문서를 변개하는 경우에도 문서의 중요 부분에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가지는 별개의 문서를 작성하는 것은 문서의 변조가 아닌 위조에 해당한다.
- ② 자연인 아닌 법인 또는 단체명의로 문서에 있어서는 요건이 구비되었다라든가 그 문서작성자로 표시된 사람이 실존하지 아니하면 위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 ③ 문서의 사본을 다시 복사한 문서의 재사본도 문서위조죄 및 동 행사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한다.
- ④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 후, 사후에 피해자의 동의 또는 추인 등의 사정으로 문서에 기재된 대로 효과의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범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 ⑤ 사자(死者)의 생존 중에 작성한 것처럼 그 작성일자를 생존 일자로 소급하여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사문서위조죄가 성립된다.

【문23】 무고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판례에 의함)

- ①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로 구성되지 아니한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 ② 신고사실이 친고죄로서 그에 대한 고소기간이 경과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이 그 신고내용 자체에 의하여 분명한 때에는 무고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 ③ 신고사실의 일부에 포함되어 있는 허위의 사실이 국가의 심판작용을 그르치거나 부당하게 처벌을 받지 아니할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고소사실 전체의 성질을 변경시키는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다.
- ④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 ⑤ 국제청장에게 탈세혐의사실에 관한 허위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문24】 형법 제263조(동시범)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 ① 가해행위를 한 것 자체가 분명치 않은 사람에 대하여는 동시범으로 다스릴 수 없다.
- ② 시간적 차이가 있는 독립된 상해행위나 폭행행위가 경합하여 사망의 결과가 일어나고 그 사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은 경우에는 동시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 ③ 공범관계에 있어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다면 동시범의 문제는 제기될 여지가 없다.
- ④ 형법 제263조의 동시범은 체포감금치상죄에는 적용할 수 없다.
- ⑤ 동시범의 특례를 규정한 형법 제263조는 상해치사죄에도 적용된다.

【문25】 다음 범죄 중 미수범의 처벌 규정이 없는 것은?

- | | | |
|-------|----------|-------|
| ① 손괴죄 | ② 배임죄 | ③ 장물죄 |
| ④ 감금죄 | ⑤ 공문서위조죄 | |

【문26】 강제집행면탈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아니한 것은? (판례에 의함)

- ① 진의에 의한 양도인 이상 양도가 강제집행면탈의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채권자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의 허위양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② 집행할 채권이 조건부 채권이라 하여도 보전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면탈 행위를 한 이상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되며 그 후 그 조건의 불성취로 채권이 소멸되었다 하여도 일단 성립한 범죄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
- ③ 담보목적의 가등기권자가 다른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불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채무자와 공모하여 정확한 청산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의제자백판결을 통하여 본등기를 경료함과 동시에 가등기 이후에 경료된 가압류등기 등을 모두 직권말소하게 한 경우,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
- ④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려면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있어야 한다.
- ⑤ 타인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가장하는 방법으로 자기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한 것은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27】 몰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판례에 의함)

- ① 몰수는 반드시 압수되어 있는 물건에 대하여서만 하는 것이 아니므로, 몰수대상물건이 압수되어 있는가 및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압수되었는가는 몰수의 요건이 아니다.
- ② 피해자로 하여금 사기도박에 참여하도록 유인하기 위하여 고액의 수표를 제시해 보인 경우, 위 수표가 직접적으로 도박자금으로 사용되지 아니하였다면 이를 몰수할 수 없다.
- ③ 공범자의 소유물도 몰수의 대상이 된다.
- ④ 공무원이 그 권한에 의하여 작성한 문서의 내용에 일부 허위 기재된 부분이 있더라도 몰수할 수 없다.
- ⑤ 수인이 공동하여 수수한 뇌물을 분배한 경우에는 각자로부터 실제로 분배받은 금품만을 개별적으로 몰수하여야 한다.

【문28】 다음 중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는?

- ① 군대의 취사반장이 사병급식용 고기를 처분한 경우
- ② 다방 종업원이 다방 주인 소유의 오토바이를 타고 심부름을 가다가 마음이 변하여 그대로 타고 가버린 경우
- ③ 뇌물공여 또는 배임증재의 목적으로 전달하여 달라고 교부받은 금전을 전달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한 경우
- ④ 을이 갑으로부터 타인 발행의 약속어음의 할인을 부탁받고 어음에 배서 양도받아 이를 다시 병에게 배서 양도하였는데 지급기일에 부도가 되어 병으로부터 어음금의 지급을 요구받자 다시 갑에게 어음금의 상환을 요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다음 어음회수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소비한 경우
- ⑤ 임차인이 이사하면서 그 소유 물건들을 임대인의 방해로 옮기지 못하고 그 임차공장 내에 그대로 두었는데 임대인이 그 후 이를 임의로 매각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

【문29】 다음 중 상해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판례에 의함)

- ① 상해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원인인 폭행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상해를 가할 의사의 존재까지는 필요하지 않다.
- ② 오랜 시간 동안의 협박과 폭행을 이기지 못하고 실신하여 범인들이 불러온 구급차 안에서야 정신을 차리게 된 경우, 외부적으로 어떤 상처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체에 대한 상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 ③ 피고인이 갑 등 3명과 싸우다가 힘이 달리자 식칼을 가지고 이들 3명을 상대로 휘두르다가, 이를 말리면서 식칼을 뺏으려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피고인에게서는 피해자에 대한 상해의 범의가 인정되며 상해를 입은 사람이 목적인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라 하여 과실상해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④ 피해자가 피고인의 상해행위를 피하려고 도로를 건너가자 피고인도 같이 도로를 건너가 상해행위를 계속하였고, 다시 피해자가 이를 피하려 도로를 건너왔는데도, 피고인이 따라 건너와 상해행위를 계속하자, 피해자가 이를 피하려고 다시 도로를 건너다가 차량에 치여 사망한 경우, 상해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 ⑤ 피고인의 구타행위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빈사상태에 빠지자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자신의 행위를 은폐하고 피해자가 자살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배란다 아래의 바닥으로 떨어뜨려 사망케 하였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포괄하여 단일의 상해치사죄에 해당한다.

【문30】 범인도피죄 또는 증거인멸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판례에 의함)

- ① 범인이 자신을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행위는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한다.
- ② 자기의 형사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증거인멸교사죄가 성립한다.
- ③ 피고인 자신이 직접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그 증거가 될 자료를 인멸하였다면, 그 행위가 동시에 다른 공범자 또는 그 공범자가 아닌 자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증거인멸죄로 처벌할 수 없다.
- ④ 범인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중지 중인 자임을 알고도, 범인으로부터 기소중지를 당하는 바람에 집에 들어갈 수 없다며 대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의 처 명의로 대신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준 경우, 임대차계약서가 공시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행위는 범인도피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⑤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도피하게 한 경우에는 그 자가 당시에는 아직 수사대상이 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범인도피죄가 성립한다.

【문31】 폭행죄(형법 제260조)와 협박죄(형법 제283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양죄 모두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 ② 양죄 모두 상습적으로 범한 경우 가중처벌된다.
- ③ 폭행죄는 미수범처벌규정이 없으나, 협박죄의 미수범은 처벌된다.
- ④ 인분을 타인의 집 마당에 던진 행위는 폭행죄에 해당한다고 함이 대법원판례이다.
- ⑤ 양죄 모두 객체가 직계존속인 경우 가중처벌한다.

【문32】 손괴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 ① 타인 소유의 광고용 간판을 백색페인트로 도색하여 광고문안을 지워 버린 행위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
- ② 경락받은 공장건물을 개조하기 위하여 그 안에 시설되어 있는 타인의 자재를 적법한 절차 없이 철거하였더라도 재물손괴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③ 경리장부를 이기하는 과정에서 누계가 잘못된 부분을 찢은 행위는 문서손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약속어음의 발행인이 소지인으로부터 그 어음을 교부받아 수취인란에 타인의 이름을 기재함으로써 배서의 연속을 상실케 한 경우, 문서손괴죄가 성립한다.
- ⑤ 약속어음의 수취인이 차용금의 지급담보를 위하여 은행에 보관시킨 약속어음을 은행지점장이 발행인의 부탁을 받고 그 지급기일란의 일자를 지운 경우 문서손괴죄가 성립한다.

【문33】 간통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간통죄는 친고죄이며, 혼인해소나 이혼소송이 고소의 전제조건이고, 고소기간은 범인을 알게된 날로부터 6개월이다.
- ②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도 간통죄의 주체가 된다.
- ③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심판청구를 제기한 것만으로는 그 이후 피고인의 간통행위를 종용 또는 유서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함이 대법원판례이다.
- ④ 고소 당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소송이 취하된 경우에는 간통고소는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고 함이 대법원판례이다.
- ⑤ 간통죄는 각 성교행위시마다 1개의 간통죄가 성립한다고 함이 대법원판례이다.

【문34】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 ① 친고죄이다.
- ② 사실을 적시하여야 하는 점에서 모욕죄와 다르다.
- ③ 명예훼손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④ 미수범은 처벌하지 않는다.
- ⑤ 범인도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문35】 친족상도례의 적용이 없는 죄는?

- ① 야간주거침입절도죄 ② 횡령죄 ③ 배임죄
- ④ 공갈죄 ⑤ 손괴죄

【비송사건절차법 15문】

【문36】 주식회사의 합병, 분할 및 분할합병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존속회사·신설회사·소멸회사의 본점소재지가 같은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와 설립등기 및 해산등기의 신청은 동시에 하여야 한다.
- ②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위한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의 주주총회의 승인결의에 있어서 상법 제370조의 의결권 없는 주식의 주주도 의결권이 있다.
- ③ 주식회사를 분할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분할되는 회사의 출자 이외에 새로운 주주를 모집하여 설립할 수는 없다.
- ④ 합병당사회사가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서면에 의한 합병계약서의 작성이 강제되나, 합병회사 및 합자회사인 인적회사 상호간의 합병으로서 존속 또는 신설회사가 인적회사인 경우에는 합병계약서의 서면작성이 강제되지 아니한다.
- ⑤ 주식회사의 신설합병절차에서 합병계약서에 일반적인 합병사항과 신설회사의 등기할 사항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고 이 합병계약서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승인된 경우, 단지 보고만을 위한 창립총회는 이사회에 결의에 의한 공고로 갈음할 수 있다.

【문37】 지배인에 관한 설명 중 타당한 것은?

- ① 지점에 지배인을 두는 경우 본점과 지점 소재지에서 각 지배인선임등기를 한다.
- ② 등기소에는 회사지배인등기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 ③ 지점 소재지의 지배인선임등기는 지점의 대표자가 신청한다.
- ④ 수인의 지배인이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는 등기사항이다.
- ⑤ 청산 중인 회사도 지배인선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문38】 다음은 지배인등기, 상호등기 및 무능력자등기 등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 ① 회사의 내부적 선임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자가 지배인으로 등기된 경우에는 그는 적법한 지배인으로 된다.
- ② 영업주가 회사로서 수개의 영업소(지점)를 가진 경우 지배인의 대리권의 범위는 영업소 단위로 한정되므로, 한 사람의 지배인이 수개의 영업소의 지배인을 겸할 수 없다.
- ③ 흡수합병으로 소멸하는 회사의 지점 지배인을 존속하는 회사의 지점 지배인으로 계속하려는 경우에는 존속회사의 해당 지점에 새로이 지배인선임등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
- ④ 등기신청한 상호가 등기된 다른 상호와 동일 또는 유사상호에 해당하면 먼저 상호를 등기한 자의 동의가 있어도 그 등기는 할 수 없다.
- ⑤ 무능력자등기에 있어서 영업허락의 취소로 인한 소멸의 등기 및 영업허락의 제한으로 인한 변경등기는 법정대리인만이 신청할 수 있다.

【문39】 주식회사 모집설립의 경우 감사인 선임사건에 관한 설명 중 타당한 것은?

- ① 이사가 법원에 감사인 선임을 청구한다.
- ② 감사인의 보고서는 창립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법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변태설립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 ④ 법원은 감사인 선임을 하기 전에 회사의 이사 및 감사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 ⑤ 관할은 회사의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 단독판사이다.

【문40】 다음은 유한회사, 합병회사 및 합자회사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판례에 의함)

- ① 청산 중인 합병회사의 사원 상호간이나 제3자에게 지분을 전부 양도함에 따른 사원의 입·퇴사의 등기신청은 이를 수리할 수 없다.
- ②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한 경우 그에 따른 변경등기신청서에는 그 지분의 양도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과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③ 합자회사의 사원 지분등기가 불실등기인 경우 그 불실등기를 믿고 합자회사 사원의 지분을 양수하였다하여 그 지분을 양수한 것으로는 될 수 없다.
- ④ 유한회사의 초대 이사 및 대표이사를 정관으로 정하지 아니하고, 초대 이사 및 대표이사의 선임에 관하여 총사원이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사원총회의사록이 아닌 총사원동의서를 첨부하여 설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⑤ 법인의 임원에 관한 등기에 첨부하는 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주민등록증사본, 자동차운전면허증사본은 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하며, 인감증명서도 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한다.

【문41】 주식회사의 소수주주의 총회소집허가신청사건에 관하여 설명한 다음 사항 중 틀린 것은?

- ①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소수주주의 임시주주총회소집청구에 관하여 소집권자가 총회소집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수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의 상대방은 대표이사이고, 그 관할은 회사의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합의부이다.
- ④ 소수주주의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법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재판한다.
- ⑤ 법원이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에 대하여 인용결정을 한 경우에는 불복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문42】 이익에 의한 주식의 소각으로 인한 변경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이익에 의한 주식의 소각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첨부서면 이외에 채권자보호절차의 이행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② 이익으로써 주식을 소각함에는 정관에 그 정함이 있어야 하며, 이는 등기사항이다.
- ③ 주식을 소각한 때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 2주간 내에 대표이사가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 ④ 상환주식을 전부 상환함으로써 미발행의 상환주식이 없게 된 경우에는 회사가 발행할 상환주식의 내용에 관한 정관의 규정은 효력을 상실하므로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 ⑤ 이익으로써 주식을 상환하는 것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요하며, 소각할 상환주식의 수도 원칙적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한다.

【문43】 감사인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법원은 감사인의 조사보고서와 발기인의 설명서를 심사하여 변태설립사항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변경하여 각 발기인에게 통고할 수 있고, 이에 대해 발기인과 이사는 즉시 항고할 수 있다.
- ② 감사인의 보수에 관한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 ③ 주식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의 감사를 위한 감사인의 선임에 관한 재판에 대해서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 ④ 감사인의 선임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구술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 ⑤ 감사인 선임신청사건은 회사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합의부가 관할한다.

【문44】 변제목적물의 공탁소 지정과 공탁물보관인의 선임사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공탁소의 지정 및 공탁물보관인의 선임의 재판을 한 경우에는 절차비용은 변제자의 부담으로 한다.
- ② 공탁소의 지정 및 공탁물보관인의 선임의 재판을 하기 전에 법원은 채권자와 변제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 ③ 공탁소의 지정 및 공탁물보관인의 선임의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으나, 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 제20조에 따라 신청인에 한하여 항고할 수 있다.
- ④ 법원이 채권자와 변제자를 심문한 모든 사건에서 조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면 된다.
- ⑤ 법원은 언제든지 선임한 공탁물보관인을 개임할 수 있다.

【문45】 주식회사의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가 아닌 것은?

- ①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
- ② 신주배정일 공고문
- ③ 주식의 청약을 증명하는 서면
- ④ 주금납입금 보관에 관한 증명서
- ⑤ 신주발행에 관한 이사회회의록 또는 주주총회의사록

【문46】 회사의 청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비송사건절차법에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청산인 해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청산인 직무집행정지 및 그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신청이 허용된다.
- ② 법원에서 해임된 청산인은 청산인으로 선임될 수 없다.
- ③ 주식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은 주식회사의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합의부가 관할한다.
- ④ 합자회사가 해산한 때에는 무한책임사원 과반수의 결의로 청산인을 선임하며, 청산인의 선임이 없는 때에는 업무집행사원이 청산인이 된다.
- ⑤ 주식회사의 청산인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임무에 위반한 행위가 있는 때에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법원에 그 해임을 청구할 수 있다.

【문47】 비송사건절차에 있어서 당사자 및 대리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비송사건절차법에는 당사자능력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51조와 같은 규정이 없기는 하나, 민사소송법의 위 규정은 비송사건에도 준용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있는 자연인 및 법인은 비송사건에서도 당사자능력이 있다.
- ② 비송사건 관계인의 대리인은 소송능력자이기만 하면 충분하고, 변호사나 법무사 등의 자격을 요하지는 아니한다.
- ③ 법원은 변호사가 아닌 자로서 대리를 영업으로 하는 자의 대리를 금하고 퇴정을 명할 수 있는데, 이 명령에 대해서는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다.
- ④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선정당사자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은 비송사건절차법이 적용되는 비송사건에도 유추적용되므로, 선정당사자를 통하여 비송사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 ⑤ 법원이 비송사건의 당사자 본인을 출석하도록 명한 때에는 소송행위를 대리시킬 수 없다.

【문48】 재단법인의 이사회 및 재단법인의 등기신청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은? (판례에 의함)

- ① 재단법인의 이사회가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정당한 소집권자가 아닌 자에 의하여 소집되고 그 이사 가운데 일부만이 참석하여 결의를 하여도 그 이사회의 결의는 효력이 있다.
- ② 재단법인의 이사회는 상법상 지배인, 농업협동조합법상의 대리인과 같은 권한을 가지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등기할 수 있다.
- ③ 재단법인의 정관에 이사회는 이사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않으면 개최하지 못한다고 규정된 경우 이사 7명 중 3명의 이사에 의하여 한 이사회의 결의는 유효하다.
- ④ 재단법인이 그 변경등기를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할 때의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의 위임장에는 언제나 관할등기소에 제출한 법인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 ⑤ 재단법인의 결의기관인 이사의 표결권은 이를 위임 또는 포기할 수 없다.

【문49】주식교환에 의한 완전모회사의 창설과 주식회사의 임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한 회사설립의 경우 당사회사는 각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그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 ② 주식교환에 의하여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이사 및 감사로서 주식교환전에 취임한 자는 주식교환계약서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식교환후 최초로 도래하는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가 종료하는 때에 퇴임한다.
- ③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총주주의 동의 또는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이상을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 ④ 보궐 또는 증원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다른 이사의 잔여임기와 같이한다는 정관 규정이 있더라도 주주총회에서 이사 전원을 새로 선임한 경우 이사의 임기는 정관이 정한 임기가 된다.
- ⑤ 상법 제383조 제3항 규정의 “정관으로 그 임기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것에는 결산기 말일 이전에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문50】신주발행, 준비금자본전입 및 전환주식 등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신주발행시 발생한 실권주를 당해 회사가 인수·납입하여 자기주식인수 부분을 포함한 신주발행에 관하여 변경등기를 경료한 경우, 상법에 위반된 위의 자기주식 취득행위는 자본충실의 원칙상 무효이므로, 이미 경료한 변경등기의 효력은 상실된다.
- ② 주식회사의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주식의 청약을 증명하는 서면 및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바, 발행된 신주를 기존 주주가 그 소유주식의 비율에 따라 전부 인수하고 그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 ③ 준비금은 회사의 이익을 주주에게 배당하지 않고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회사에 적립하여 두는 계산상의 수액으로서, 상법상 자본전입이 가능한 준비금은 이익준비금과 자본준비금에 한한다.
- ④ 자본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이익준비금이 적립된 경우에 그 초과액은 자본에 전입할 수 없다.
- ⑤ 주식의 전환은 그 청구를 한 때에 효력이 생기므로 그 변경등기는 전환청구를 한 날로부터 할 수 있을 것이나, 그 변경등기의 종기는 전환을 청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주간 내에 하면 된다.

【제4과목 50문】

【부동산등기법 30문】

【문 1】 등기신청의 대리에 관한 기술이다. 틀린 내용은?

- ① 등기신청의 대리에 있어서는 자기계약·쌍방대리도 허용된다.
- ② 등기신청을 등기관이 접수한 후 등기를 완료하기 전에 본인이 사망하여도 그 등기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 ③ 일반인이 대리인이 되어 수시로 반복하여 등기신청을 하는 등 업으로 한다는 의심이 있을 경우에는 신청인과 대리인의 관계를 밝히고 보수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신청인 작성의 확인서 및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 ④ 부동산중개업자가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수회에 걸쳐 계속 반복적으로 등기신청을 하는 것은 보수의 유무에 관계없이 법무사범 제3조에 위반된다.
- ⑤ 국가가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법무사를 ‘국’의 등기신청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문 2】 공동저당에 관한 다음의 기술 중 틀린 내용은?

- ① 공동저당을 이루는 복수의 저당권은 각각 독립된 저당권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 ② 공동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각 부동산별로 분할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는 신청할 수 없다.
- ③ 대지에 대하여 먼저 저당권이 설정되고 그 후 대지권등기 후 구분건물에 관하여 동일채권의 담보를 위한 추가저당권을 설정하려는 경우는 구분건물과 대지권을 일체로 신청할 수 있다.
- ④ 동일채권을 담보한다면 부동산과 등기된 선박에 대하여도 공동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 ⑤ 추가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할 경우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등기필증은 추가되는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필증만 첨부하면 된다.

【문 3】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타당한 것은?

- ① 처분금지가처분에 기하여 전세권의 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관은 위 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전세권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한다.
- ② 처분금지가처분에 기하여 임차권의 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가처분권리자는 단독으로 그 처분금지가처분등기 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가압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 ③ 처분금지가처분에 기하여 저당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등기는 이를 말소하지 아니한다.
- ④ 처분금지가처분에 기하여 지상권의 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가처분권리자는 그 가처분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 ⑤ 처분금지가처분에 기하여 저당권의 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관은 당해 가처분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한다.

【문 4】 예고등기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고등기를 할 수 없다.
- ② 예고등기는 등기말소 또는 회복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경고하는 목적을 가질 뿐 부동산에 대한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은 없다.
- ③ 폐쇄등기부에 등재된 등기사항에 관하여 예고등기의 촉탁이 있는 때에는 등기관은 그 등기사항을 신등기용지에 이기한 후 예고등기를 하여야 한다.
- ④ 동일한 등기사항에 대하여 2이상의 예고등기가 실행된 후 그 중 어느 하나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송에서 원고 승소의 판결이 확정되어 동 판결에 기하여 말소 또는 회복등기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소송의 예고등기뿐만 아니라 동일한 등기사항에 대한 다른 예고등기도 등기관이 직권말소하여야 한다.
- ⑤ 예고등기의 대상으로 된 등기사항에 대하여 원고 승소의 확정판결이 아닌 당사자로부터 해지 또는 해제 등을 원인으로 말소 또는 회복등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관은 그 예고등기를 직권말소할 수 없다.

【문 5】 등기신청의 취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등기신청의 취하는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 ② 등기신청이 등기관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에 의한 경우 그 등기신청의 취하도 등기관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 ③ 수개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을 일괄하여 동일한 신청서에 의하여 한 경우, 그 중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만 등기신청을 취하하는 것도 가능하다.
- ④ 등기신청이 취하된 경우 그 등기신청서와 부속서류를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환부한다.
- ⑤ 등기신청대리인이 등기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는 취하에 대한 특별수권이 있어야 한다.

【문 6】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및 관련 예규에 따른 중복등기의 정리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중복등기용지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동일한 경우, 등기관은 등기명의인과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관할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받아 중복등기를 정리하여야 한다.
- ② 토지의 동일성은 지번, 지목, 지적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지번이 일치되더라도 지목과 지적이 전혀 상이한 경우에는 동일한 토지로 볼 수 없다.
- ③ 중복등기용지 중 1등기용지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자기명의의 등기용지를 폐쇄하여 중복등기를 정리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이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④ 중복등기용지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동일한 경우, 후등기용지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등에 관한 등기가 있고 선등기용지에는 그와 같은 등기가 없는 경우에는 선등기용지를 폐쇄한다.
- ⑤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에 의한 중복등기의 정리는 실체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문 7】 변경(경정)등기와 관련한 다음의 내용 중 틀린 것은?

- ① 근저당권자인 회사의 본점이 여러 번 이전되었을 때에는 중간의 변경사항을 생략하고 최종 본점소재지로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를 할 수 있다.
- ② 유한회사를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한 경우에도 권리주체로서의 동일성은 유지되지만 등기의 기술적 처리를 위하여 편의상 전자에 있어서는 해산의 등기, 후자에 있어서는 설립의 등기를 하여야 하며, 전자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는 후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③ 을 회사가 갑 회사를 흡수합병하였으나 그에 따른 근저당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상호를 병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곧바로 갑 회사로부터 병 회사로의 근저당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 ④ 피상속인의 등기부상 표시가 호적부와 상이한 때에는 서로 동일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시·구·읍·면의 장의 서면 등을 첨부하여 피상속인인 등기명의인의 표시경정(또는 변경) 등기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상속등기를 할 수 있다.
- ⑤ 수 차례의 법률개정으로 특수법인의 변경이 있었을 경우, 해당된 모든 법률에서 종전 법인의 명칭은 이를 새로운 법인의 명칭으로 본다고 규정한 경우에 새로운 법인은 이러한 사실을 소명하여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문 8】 신탁등기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내용은?

- ① 수탁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공동수탁자가 합유관계라는 표시를 신청서에 하여야 한다.
- ② 건설회사가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업무편의상 그 사업부지에 대하여 신탁을 받기로 했더라도, 건설회사가 신탁업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이상 위와 같이 신탁을 받아 건설회사를 수탁자로 하는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 ③ 신탁의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수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하나의 신청서에 의하여 신탁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신탁원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④ 농지에 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리신탁, 처분신탁, 담보신탁 등 신탁의 목적에 관계없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 ⑤ 신탁회사는 농지법 제2조 제2호의 농업인이나 제3호의 농업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6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농지를 소유할 수 없고, 따라서 농지의 처분만을 목적으로 수탁받은 경우에도 그 농지에 대하여 신탁회사를 수탁자로 하는 신탁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문 9】 농지취득자격증명에 관한 다음의 기술 중 옳지 않은 내용은?

- ①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농지를 취득하는 것이 허용되므로 학교가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 ② 농지의 공유물분할로 취득한 면적이 종전 공유지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 ③ 등기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모두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야 한다.
- ④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농지로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 ⑤ 농지의 매매예약에 기한 가등기신청의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문10】 등기의 효력에 관한 다음의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등기의 전후에 의한다.’는 부동산등기법의 규정은 순위확정의 원칙을 규정한 것이다.
- ② 존속기간의 만료로 지상권이 실체법상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그 지상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않는 한 제3자를 위한 지상권설정등기신청은 수리될 수 없는 것으로 보는데 이는 후등기저지력 때문이다.
- ③ 예고등기는 어느 종류의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공시함으로써 그 부동산에 관하여 거래를 하려는 제3자에게 경고를 하는 효력을 갖는데 이러한 효력은 사실상의 효력에 불과하다.
- ④ 어떠한 등기가 있으면 그에 대응하는 실체적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효력을 법이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등기된 권리에 대하여 권리의 부존재나 무효를 주장하는 자는 스스로 그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 ⑤ 부동산의 시효취득에 있어서는 등기가 마치 동산시효취득에 있어서의 점유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문11】 등기신청서와 관련한 다음의 기술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 내에 있는 수 개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원인과 그 등기의 목적이 동일한 때에 한하여 동일한 신청서로써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신청인이 다수인 경우에 신청서를 정정할 때에는 신청인 중 1인이 정정인을 날인하면 된다.
- ③ 신청서가 여러 장일 때에는 신청인은 간인을 하여야 하는데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다수인 때에는 그 중 1인이 간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 ④ 임의적 기재사항도 반드시 법률에 근거규정이 있어야 하며, 등기원인증서에 임의적 기재사항에 해당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 ⑤ 동일한 등기신청서상의 부동산표시란에 2개 이상의 부동산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문12】 등기소의 관할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부동산이 수개의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때에는 신청에 의하여 그 각 등기소를 관할하는 상급법원의 장이 관할 등기소를 지정한다.
- ② 등기할 권리의 목적인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동지원 또는 등기소를 관할등기소로 한다.
- ③ 상급법원장은 어느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사무를 다른 등기소에 위임하게 할 수 있다.
- ④ 어느 부동산의 소재지가 갑 등기소의 관할로부터 을 등기소의 관할로 전속한 때에는 갑 등기소는 그 부동산에 관한 등기용지와 부속서류 또는 그 등본을 을 등기소에 이송하여야 한다.
- ⑤ 등기관이 등기를 완료한 후 등기가 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지 않음을 발견하면 부동산등기법 제175조 내지 제177조에 의하여 직권말소하여야 한다.

【문13】 합유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합유등기에 있어서는 등기부상 각 합유자의 지분을 표시하지 아니한다.
- ② 합유자 중 일부가 나머지 합유자들 전원의 동의를 얻어 그의 합유지분을 매도한 경우에는 합유지분을 처분한 합유자와 합유지분을 취득한 합유자의 공동신청으로 합유명의인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 ③ 합유자 2인 중 1인이 탈퇴하여 잔존합유자가 1인만 남은 경우에는 탈퇴한 합유자와 잔존합유자의 공동신청으로 잔존합유자의 단독소유로 하는 합유명의인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 ④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합유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은 사망한 합유자의 지분에 관하여 상속인 앞으로 상속등기를 할 수 없다.
- ⑤ 단독소유를 수인의 합유로 이전하는 경우 단독소유자와 합유자들의 공동신청으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문14】 지상권에 관한 등기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타당하지 아니한 것은?

- ① 지상권의 목적이 토지의 일부인 때에는 지적도를 첨부하고 그 목적인 부분을 표시하여야 한다.
- ② 지상에 건물이 건립되어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지상권설정등기를 할 수 없다.
- ③ 존속기한을 100년 또는 120년으로 하는 지상권설정등기도 가능하다.
- ④ 동일 토지에 관하여 지상권이 미치는 범위가 다른 2개 이상의 구분지상권을 각기 따로 등기할 수 있다.
- ⑤ 구분지상권에 있어 지하 또는 공간의 상하의 범위는 평균 해면 또는 지상권을 설정하는 토지의 특정 지점을 포함한 수평면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명백히 하여야 하나 도면을 첨부할 필요는 없다.

【문15】 다음 중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 ①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 ②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 ③ 근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여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 ④ 포괄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 ⑤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문16】 국민주택채권의 매입대상자인 것을 고르면?

- ① 저당권의 설정의 경우 저당권설정자
- ② 건축물의 소유권보존등기명의인
- ③ 상속등기에 있어 목적물의 시가표준액은 3,000만원이나 자신이 취득하는 지분의 시가표준액이 700만원인 상속인
- ④ 저당권설정 금액이 1200만원인 저당권이전등기의 경우 저당권을 이전받는 자
- ⑤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지방자치단체

【문17】 인감증명의 제출에 관한 설명이다. 옳바르지 못한 것은?

- ① 근저당권이전등기신청의 경우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증을 첨부한 때에는 근저당권을 이전하는 자의 인감증명 제출을 요하지 아니한다.
- ② 등기신청에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등기신청을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하는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출하여야 하는 인감증명은 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 ④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는 상속인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⑤ 등기신청서에 제3자의 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는 경우 그 서면이 공정증서인 경우에는 인감증명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한다.

【문18】 직권에 의한 등기의 경정에 관하여 설명한 것이다. 옳바르지 못한 것을 고르면?

- ① 등기의 착오 또는 유류가 등기관의 과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등기관은 지체없이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받아 등기의 경정을 하여야 한다.
- ② 등기관은 직권에 의한 경정등기를 한 때에는 그 취지를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고 등기관리자와 등기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위 ②의 경우에 등기관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중 1인에게 통지할 수 있다.
- ④ 등기관은 등기의 착오 또는 유류가 등기관의 과오로 인한 것임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채권자대위에 의하여 등기를 완료한 후 그 등기가 등기관의 착오로 인한 것이어서 직권에 의하여 경정등기를 한 때에는 대위채권자에게도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문19】 말소회복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 ① 말소회복등기는 어떤 등기가 전부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에 한다.
- ② 부적법하게 말소된 이유는 실체적 이유이건 절차적 하자에 기인한 것이든 이를 불문한다.
- ③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 등기가 부적법한 것인 때에는 직권으로써 회복등기를 하여야 한다.
- ④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 말소회복등기가 종전의 순위를 보유하기 위하여는 그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 ⑤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회복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국민 주택채권매입필증을 첨부할 필요는 없다.

【문20】 접수된 등기신청서를 등기관이 심사한 후 취할 수 있는 조치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은?

- ① 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관은 신청인에게 보정을 명하여야 하고 보정명령 없이 각하할 수는 없다.
- ② 보정은 신청당사자나 대리인이 직접 등기소에 출석할 필요는 없고 법무사나 변호사의 제출사무원이 보정하면 된다.
- ③ 등기관은 신청이 각하사유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유의 기재 없이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 ④ 각하결정등본을 교부하거나 송달할 때에는 등기신청서 이외의 첨부서류도 함께 교부하거나 송달하여야 한다.
- ⑤ 등기관은 등기가 완료된 후 그 등기가 부동산등기법 제55조의 각 호 각하사유에 위반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직권으로 말소한다.

【문21】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 ① 형성판결인 공유물분할판결도 확정되면 판결에 의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그 소송의 원고의 지위에 있는 자만이 등기관리자로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확정된 지 10년이 경과하여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짐작이 가는 판결이라도 그 판결에 기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공유물분할판결의 경우에는 당해 확정판결의 선고연월일이 그 등기원인일자라 된다.
- ④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자가 그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패소한 등기의무자가 그 판결에 기하여 직접 말소등기를 신청하거나 대위등기를 할 수는 없다.
- ⑤ 원고가 소외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었어도 화해의 효력이 소외인에게 미치지 아니하므로 위 소외인이 단독으로 위 화해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문22】 등기신청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등기신청수수료에 대한 설명이다. 옳바르지 못한 것은?

- ① 수개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을 일괄하여 하나의 신청서로써 하는 경우에는 등기의 목적에 따른 소정의 수수료액에 신청대상이 되는 부동산 개수를 곱한 금액을 등기신청수수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 ② 집합건물에 대한 등기신청의 경우 각 구분건물별로 수수료를 납부하되, 대지권등기가 되어 있는 구분건물도 등기신청수수료 산정에 있어서는 1개의 부동산으로 본다.
- ③ 대지권의 표시등기 또는 변경등기신청의 경우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개수별로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④ 경락으로 인한 등기축탁에 있어 축탁의 대상이 되는 등기의 목적이 수개인 경우에는 각 등기의 목적에 따른 신청수수료를 합산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 ⑤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환매특약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수수료 외에 환매특약의 등기의 신청수수료를 별도로 납부하여야 한다.

【문23】 일부말소의 의미의 경정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 ① 그 등기를 함에 있어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반드시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 ②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등기를 하여야 한다.
- ③ 갑과 을의 공유로 등기된 부동산 중 을 지분에 대해서만 처분제한의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갑 단독소유로 하는 경정등기를 하는 경우에 그 처분제한등기는 말소하여야 한다.
- ④ 가압류, 가처분 등 법원의 축탁에 의한 처분제한의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 또는 경정하는 경우 등기관은 지체없이 그 뜻을 집행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⑤ 갑과 을의 공유로 등기된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용익물권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갑 단독소유로 하는 경정등기(을 지분 말소의 의미)를 하는 경우에 등기관은 그 용익물권등기를 경정 전의 갑 지분에 대한 것으로 직권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문24】 등기관의 직권으로 하는 등기가 아닌 것은?

- ① 환매권의 실행에 따라 환매권자 명의로 이전등기를 한 경우의 환매특약의 등기의 말소
- ② 매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시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을 말소하는 등기
- ③ 등기를 말소하는 때에 말소할 권리를 목적으로 한 제3자의 권리의 등기로서 그 승낙서가 첨부된 경우
- ④ 건물의 등기용지에 대지권의 등기를 한 때에 그 권리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용지에 하는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
- ⑤ 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하여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의 등기를 한 때에 그에 관한 예고등기

【문25】 다음 중 등기할 수 있는 것은?

- 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금지하는 내용의 가처분
- ② 주위토지통행권확인판결에 따른 토지통행권
- ③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환매권
- ④ 등기원인에 등기의 목적인 권리의 소멸에 관한 약정
- ⑤ 구분건물의 구조상 공용부분

【문26】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은 건축물대장에 자기명의로 소유권이 전등록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직접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 최초 소유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양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 ② 미등기토지 1필지의 일부지분만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은 그 판결만으로 1필지 전체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다.
- ③ 미등기건물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판결을 받은 사람은 그 판결을 첨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 ④ 미등기 토지의 지적공부 상 “국”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사람은 직접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⑤ 대장상 소유자의 성명, 주소 등의 일부 누락 또는 착오가 있어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유자는 대장상의 소유자표시를 경정등록한 후 그 등본을 첨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문27】 다음 중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는 것은?

- ① 대위보존등기신청 당시 피대위자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지 않은 경우
- ②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기의 상속지분만에 관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 ③ 등기신청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때
- ④ 구조상 및 이용상 독립성이 없는 건물부분을 구분건물로 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 ⑤ 처분금지가처분기입등기 이후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

【문28】 등기부 또는 등기부등본의 양식 중 각 난을 기재한 것이다.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두지 않는 난을 고르면?

- ① 표시번호란 ② 등기번호란
- ③ 순위번호란 ④ 건물번호란
- ⑤ 건물내역란

【문29】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타당하지 아니한 것은?

- ① 확정판결의 주문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라는 취지의 기재가 없는 소유권이전등기 판결이라도 그 판결이유에서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의 이행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판결을 원인증서로 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수인의 가등기권리자 중 일부의 자는 자기 지분만에 대하여 본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 ③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경료 이후 다른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경우,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권자가 본등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가등기권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등기권자는 가등기의무자에 대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 ④ 갑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등기가 경료되고 그 후 갑이 사망하여 그 상속인 중 1인인 병 명의의 협의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경우,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는 병을 상대로 하여야 한다.
- ⑤ 등기부상의 가등기원인일자와 본등기를 명한 확정판결 주문의 가등기원인일자가 상이한 경우라도 판결이유에 적시된 바에 따라 매매의 동일성이 인정되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할 수 있다.

【문30】 전세권설정에 관한 설명 중 옳바르지 못한 것은?

- ① 전세권의 설정등기는 1필의 토지 일부 또는 1동의 건물 일부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 ② 신청서에는 반드시 전세금을 기재하여야 한다.
- ③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 ④ 농지에 대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 ⑤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한다.

【 공탁법 20문 】

【문31】 공탁자인 주식회사가 보증공탁을 한 이후에 주주총회 결의로 해산하면서 종전 대표이사를 청산인으로 선임하여 청산절차를 진행하던 중 채무초과로 파산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의 결정을 하고 확정된 경우 파산종결된 위 회사가 공탁금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설명은?

- ① 파산절차가 종결되어 회사가 소멸하였으므로 공탁금회수청구는 불가능하다.
- ② 파산신청 당시의 회사의 채권자들과 청산인이 공동으로 공탁금회수청구를 하여야 한다.
- ③ 청산인은 파산선고 및 파산폐지결정을 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공탁금회수청구를 할 수 있다.
- ④ 파산신청 당시의 회사의 채권자들이 선출한 대표자가 공탁금회수청구를 할 수 있다.
- ⑤ 파산종결된 회사를 대표하여 청산인이 공탁금회수에 관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추어 공탁금회수청구를 할 수 있다.

【문32】 ‘을’의 근저당권, ‘병’의 가압류, ‘정’의 소유권등기말소 소송의 제기에 따른 소유권말소예고등기 등이 순차로 경료된 ‘갑’소유의 토지를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수용하고 그 보상금을 공탁하고자 할 때 피공탁자는?

- ① 갑 ② 갑 또는 을
③ 갑 또는 정 ④ 갑 또는 을 또는 병
⑤ 갑 또는 을 또는 병 또는 정

【문33】 갑은 을에 대하여 1억원의 물품대금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데, 을의 채권자 병이 이 물품대금채권액 중 7천만원에 대하여 가압류를 한 경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갑이 가압류를 원인으로 공탁하는 경우 즉시 공탁서를 첨부하여 집행법원에 사유신고하여야 한다.
- ② 갑이 가압류를 원인으로 7천만원을 공탁한 경우 공탁공무원은 피공탁자인 을에게 공탁통지서를 발송하고, 가압류채권자 및 가압류발령법원에 공탁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③ 갑이 가압류를 원인으로 7천만원을 공탁한 경우 병이 7천만원에 대하여 위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얻었다면 병은 집행법원의 지급위탁 및 지급증명서 없이도 공탁공무원을 상대로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다.
- ④ 갑이 가압류를 원인으로 1억원을 공탁하고 피공탁자 을이 3천만원을 출급해가기 전에 을의 다른 채권자 정이 3천만원의 (제3채무자를 공탁공무원으로, 피압류채권을 피공탁자 을의 공탁금출급청구권으로 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얻은 경우 정은 집행법원의 지급위탁 및 지급증명서 없이도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다.
- ⑤ 갑이 가압류를 원인으로 1억원을 공탁하는 경우 피공탁자 을은 집행법원의 지급위탁 및 지급증명서를 첨부해야 3천만원을 출급할 수 있다.

【문34】 공탁자가 공탁물을 회수청구할 때 공탁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가. 공탁물 회수청구인이 관공서인 경우
나. 공탁통지서를 첨부한 경우
다.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한 경우
라. 공탁서 상의 공탁금액이 300만원이고 주민등록증으로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마. 공탁서에 날인한 인영과 회수청구서에 날인한 인영이 동일한
경우

- ① 가, 나, 다, 라 ② 나, 다, 라, 마
③ 나, 다, 라 ④ 다, 라, 마
⑤ 다, 라

【문35】 다음은 조건부 변제공탁이 유효한 경우를 나열한 것이다.
잘못된 것은?

- ① 매매잔대금지급의무와 소유권이전등기이행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부동산매수인이 매매 잔대금을 공탁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반대급부조건으로 한 경우
- ② 근저당권설정자가 해당채무를 공탁하면서 그 공탁금 수령의 조건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 ③ 채무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 그 약속어음의 반환을 조건으로 한 공탁
- ④ 전세권설정자가 전세보증금을 공탁하면서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서류를 반대급부조건으로 한 경우
- ⑤ 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가 없는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하고 잔대금 지급 전에 목적부동산 위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경우 매수인이 잔대금을 공탁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 및 근저당권말소를 반대급부조건으로 한 경우

【문36】 다음은 공탁서정정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 ① 피공탁자를 ‘갑’으로 하는 공탁이 수리된 후 ‘갑’이 개명을 하였다면 피공탁자를 정정하는 공탁서정정이 선행되어야 공탁물을 출급할 수 있다.
- ② 정정 전·후의 공탁의 동일성이 부정되는 경우에는 공탁서정정이 허용되지 않는다.
- ③ 공탁원인사실란에 기재되어 있는 적용법조의 정정신청이나 반대급부의 내용을 삭제하는 정정신청은 허용된다.
- ④ 공탁서정정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탁자는 착오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공탁물을 회수하고 다시 공탁하여야 할 것이다.
- ⑤ 공탁서정정이 적법하게 수리된 경우 정정의 효력은 당초 공탁시로 소급하여 발생함이 원칙이다.

【문37】 다음은 변제공탁의 회수에 관한 설명이다. 그 내용이 잘못 된 것은?

- ①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의 경우 공탁물의 회수를 규정한 민법 제489조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사업시행자는 그 공탁물을 회수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 ② 착오공탁이나 공탁원인 소멸로 인한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의 회수는 인정된다.
- ③ 공탁자가 피공탁자를 잘못 지정한 경우에는 착오공탁을 이유로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
- ④ 공탁자가 공탁물납입기한이 지난 후에 공탁물을 납입한 경우라도 공탁은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공탁물을 회수할 수 없다.
- ⑤ 공탁으로 인하여 질권, 저당권이 소멸하였다면 공탁물의 회수는 인정되지 않는다.

【문38】 제3채무자의 권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절차 중 금전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압류가 있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치 못한 것은?

- ① 제3채무자는 압류된 채권액 또는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액 전액을 공탁할 수 있고, 공탁을 한 후 즉시 공탁서를 첨부하여 그 내용을 서면으로 집행법원에 사유신고하여야 한다.
- ② 제3채무자가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액 전액을 공탁한 경우에 제3채무자가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회수청구를 할 경우에는 집행법원으로부터 공탁서를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교부받아 이를 공탁금회수청구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 ③ 제3채무자가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액 전액을 공탁한 경우에 제3채무자는 공탁서의 피공탁자란에 압류명령의 채무자를 기재하며, 공탁사무처리규칙 제22조에서 정한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④ 제3채무자가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액 전액을 공탁한 경우에 공탁금 중에서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에 대하여는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에 의하여 공탁금의 출금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제3채무자가 압류된 채권액에 대하여만 공탁한 경우에 공탁서의 피공탁자란에 압류명령의 채무자를 기재한다.

【문39】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금 출급청구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절대적 불확지공탁의 경우 공탁자(사업시행자)가 후에 피공탁자를 알게 되더라도 그를 피공탁자로 지정하는 공탁서정정신청을 통하여 피공탁자가 직접 출급청구를 하게 할 수는 없다.
- ② 피공탁자가 특정되어 있는 경우 수용시기 이후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때 수인은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갖지 못한다.
- ③ 상대적 불확지공탁의 경우 피공탁자 사이에 권리의 귀속에 관하여 분쟁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피공탁자의 승낙서(인감증명서 첨부) 또는 협의성립서를 첨부하여 출급청구할 수 있다.
- ④ 상대적 불확지공탁의 경우 피공탁자 전원이 공동으로 출급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 ⑤ 절대적 불확지공탁의 경우 공탁자를 상대로 하여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확인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 판결正本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직접 출급청구할 수 있다.

【문40】 다음 중 상대적 불확지공탁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 ①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 ②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예고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 ③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등기부가 2개 개설되어 있고 그 소유명의인이 각각 다른 경우
- ④ 등기부상 공유지분의 합계가 1을 초과하거나 미달되어 피수용자들의 정당한 공유지분을 알 수 없는 경우
- ⑤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가압류, 압류, 경매개시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문41】 다음은 공탁시의 첨부서류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 ① 비법인 사단이 판결에 기하여 공탁을 하는 경우 판결문상에 사단의 실체 및 대표자가 표시되어 있다면 정관 기타 규약과 대표자의 자격증명서면을 첨부할 필요 없이 그 판결문만을 첨부하여 공탁할 수 있다.
- ② 변제공탁의 경우 피공탁자의 주소를 표시하는 때에는 그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을, 피공탁자의 주소가 불명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③ 피공탁자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고 그 주소로 판결正本이 송달된 바 있다하여도 판결문은 원칙적으로 피공탁자의 주소소명서면이 될 수 없다.
- ④ 재결서에 피공탁자 주소가 표시되어 있고 표시된 주소가 피공탁자의 주민등록표등·초본상의 주소와 일치된다 해도 재결서가 피공탁자의 주소소명서면이 될 수 없다.
- ⑤ 주소소명서면인 주민등록표등·초본은 피공탁자의 현주소를 소명할 수 있는 것이면 비록 작성일로부터 3월이 경과한 것이라도 무방하다고 보아야 한다.

【문42】 다음은 변제공탁의 공탁통지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 ① 채권자절대적불확지공탁 후 피공탁자를 확정하게 될 경우 피공탁자를 지정하는 공탁서정정신청을 하면서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할 것이다.
- ② 피공탁자의 주소를 정정하는 공탁서정정신청을 할 경우에도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③ 공탁공무원이 공탁물보관자로부터 공탁물납입통지서의 송부를 받기 전에는 공탁통지서를 피공탁자에게 발송할 수 없다.
- ④ 공탁통지는 공탁의 유효요건이므로 공탁통지가 되지 않은 경우는 채무소멸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⑤ 공탁통지서를 발송함에 있어서는 민사소송법상의 송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문43】 다음은 변제공탁의 공탁금출급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일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 ① 공탁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대하여 공탁자와 피공탁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분쟁이 해결된 때로부터 기산한다.
- ② 반대급부의 조건이 있는 공탁의 경우에는 반대급부가 이행된 때로부터 기산한다.
- ③ 정지조건부 또는 시기부 공탁인 경우에는 조건이 성취된 때 또는 기한이 도래된 때로부터 기산한다.
- ④ 절대적 불확지공탁의 경우는 공탁서정정 등을 통해 피공탁자가 공탁사실을 안 날로부터 기산한다.
- ⑤ 상대적 불확지공탁의 경우는 피공탁자들 모두가 공탁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문44】 다음 설명 중 판례의 입장에 가장 부합하지 않는 것은?

- ①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전부채권자의 공탁금 지급청구에 대하여 공탁공무원이 선행하는 가압류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를 불수리하고 압류경합을 이유로 사유신고를 한 경우, 공탁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 ② 매수인이, 매도인을 대리하여 매매잔대금을 수령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병에게 잔대금 수령을 최고하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필요한 서류등의 교부를 반대금부조건으로 하면서, 병을 공탁물 수령자로 규정한 잔대금 변제공탁은 유효하다.
- ③ 수용되는 토지에 대하여 가압류가 집행되어 있어도 토지수용으로 사업시행자가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함으로써 가압류의 효력은 소멸되는 것이고, 토지에 대한 가압류가 그 수용보상금 청구권에 당연히 전이되어 그 효력이 미치게 된다고는 볼 수 없다.
- ④ 공탁자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필요한 서류등의 교부를 반대금부조건으로 하면서 변제공탁한 후 이와는 별도로 같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면 위 공탁의 반대금부는 이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⑤ 저당권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이 있었으나 아직 그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을 때 기업자가 그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에 그 저당권자를 피공탁자로 기재할 수 없음은 물론 공탁서상의 어느 난에도 이를 기재할 필요가 없다.

【문45】 가압류해방공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가압류해방공탁금의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그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된 때에는 공탁일로부터 위 명령이 제3채무자인 국가에 송달되기 전일까지의 공탁금에 대한 이자는 공탁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이다.
- ② 가압류해방공탁을 신청하는 경우에 그 첨부서면으로는 해당 가압류명령의 정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 ③ 채권자 갑이 채무자 을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한 후에 제3자인 병이 가압류된 그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제3취득자인 병은 가압류집행 취소를 위한 해방공탁을 할 수 있다.
- ④ 가압류해방공탁이 있는 후 그 가압류 채권자의 채권자가 “가압류 채권자의 가압류 채무자에 대한 분안판결 확정 후 제3채무자인 국가에 대하여 회수청구할 공탁금채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하여 채권가압류를 받았다면 공탁자인 가압류채무자는 공탁금을 회수청구할 수 없을 것이다.
- ⑤ 가압류 채무자가 제소기간 도과에 의한 가압류결정취소결정을 받아 가압류해방공탁금을 회수하려면 공탁원인 소멸 증명서면으로 그 가압류결정취소결정정본 및 확정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문46】 공탁공무원의 사유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 ① 공탁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복수의 압류명령 등이 있더라도 각 압류의 법률적 성질상 압류액의 총액이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지 아니하여 본래의 의미에서의 압류의 경합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공탁공무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사유신고를 할 수 없다.
- ② 경합된 압류명령이 서로 다른 법원에 의하여 발하여진 경우에는 공탁공무원은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 중 자신의 근무지에 가장 가까운 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③ 가압류명령과 압류명령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공탁공무원은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④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원인으로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제248조 제1항에 의하여 공탁한 후에 피공탁자(가압류채무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가 이루어져 압류의 경합이 성립하거나 공탁사유인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제3채무자가 사유신고를 하여야 하고 공탁공무원은 사유신고를 할 수 없다.
- ⑤ 공탁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자 경합이 생기고 집행채권의 총액이 피압류채권(공탁금지급청구권) 총액을 초과하여 채관상 배당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공탁공무원은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채권자가 서로 다른 채권에 기초하여 압류를 한 후 다시 압류(또는 가압류)를 한 경우에는 채권자 경합이 있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문47】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양도통지가 있는 경우의 업무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양도통지서에 날인된 양도인의 인영에 대하여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 양도증서를 공증받았거나 공탁금회수청구권의 양도통지서에 날인된 양도인의 인영이 공탁서 또는 위임에 의한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에 날인된 인영과 동일한 경우에는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제출 없이도 양수인은 공탁금을 지급청구할 수 있다.
- ② 변제공탁의 경우 공탁공무원에게 도달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양도통지서에 공탁수락의 의사표시가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적극적인 불수락의 의사표시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한 그 양도통지서의 도달과 동시에 공탁수락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 ③ 위 ②의 경우, 공탁자의 민법 제489조 제1항에 의한 회수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다.
- ④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양도통지서에 날인된 양도인의 인영에 대하여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양도인은 공탁금의 지급청구를 할 수 없다.
- ⑤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양도통지서에 날인된 양도인의 인영에 대하여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 양수인이 공탁금을 지급청구할 때에는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문48】 보증지급 및 최고지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공탁물출급청구서에 공탁통지서나 그 대체서면을 제출할 수 없는 때는 대신 공탁공무원이 인정하는 두 사람 이상이 연대하여 그 사건에 관하여 손해가 생기는 때에는 이를 배상한다는 보증서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다.
- ② 공탁서상의 피공탁자의 주소가 주소증명서면상의 주소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도 보증지급절차에 의하여 피공탁자는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다.
- ③ 최고지급절차에서 공탁공무원은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공탁물의 출급 또는 회수청구에 관한 이의가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그 이유를 기재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통지하여야 하는데, 이 통지는 특별송달의 방법에 의한다.
- ④ 최고지급절차에서 이해관계인을 알 수 없는 때에는 공고기간 만료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여야 하는데, 이 공고방법은 원칙적으로 공탁소의 게시판에 게시하는 외에 일간신문에 1회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 ⑤ 최고지급절차에서 이의신청이 있으면 공탁공무원은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이의신청서에 의견을 첨부하여 이를 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문49】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이 주소지인 갑이 인천 강화도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과실로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던 피해자 을(주소지가 경기도 용인시임)을 부딪혀 다치게 하여 인천 강화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 갑이 을을 피공탁자로 하여 변제공탁을 하고자 한다면 어느 공탁소에 공탁신청을 할 수 있는가?

※ 공탁소 관할 ※

서초동(서울중앙지방법원), 강화도(강화군법원, 인천지방법원), 용인시(용인시법원, 수원지방법원)

- ① 서울중앙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 ② 서울중앙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 ③ 서울중앙지방법원, 용인시법원
- ④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 ⑤ 서울중앙지방법원, 용인시법원, 강화군법원

【문50】 재판상 보증공탁에 관한 판례의 입장과 가장 부합하지 않는 것은?

- ① 가압류보증공탁을 한 경우 비록 그 가압류명령이 집행되지 아니하고 집행기간이 도과된 경우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담보사유는 소멸되었다고 할 수 없다.
- ② 가압류보증공탁이 담보하는 채무자의 손해배상 범위에는 그 가압류명령 자체를 다투는데 필요한 소송비용도 포함된다 할 것이다.
- ③ 종국판결로 가처분의 취소를 선고하면서 공탁을 명하여 보증공탁이 이루어진 경우 이 가처분취소판결이 확정된 것만으로 그 담보사유가 소멸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 ④ 가집행선고가 붙은 항소심 판결이 상고심에서 파기되어 항소심에 환송된 경우에는 본안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의 집행을 정지하기 위하여 제공된 담보는 그 담보원인이 소멸되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⑤ 제1심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항소심 판결 선고까지 정지하기 위하여 담보를 제공한 경우 그 담보권리자가 담보제공자를 상대로 별소에 의하여 담보 목적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결과 청구가 기각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담보의 사유는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